

Setting up for SUCCESS

초기 스타트업의 탄탄한 성장을 위한 가이드





서 문



바야흐로 스타트업의 시대입니다. 사물인터넷(IoT), O2O, Fin-Tech, 가상현실(VR/AR), 3D Printing, 인공지능(AI), Big Data, Mobile 가속화 등 기술 환경의 급변화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가 부각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금조달, 인재발굴, 고객확보, 국내외 판로개척, 회계/세무 전문지식, 조직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명 ‘죽음의 계곡’을 경험하며 도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이 2013년 기준 41.0%로 미국 57.6%, 이스라엘 55.4%, 호주 62.8%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20%나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 극복에 일조하고자 삼정KPMG는 KPMG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KPMG Start up Innovation Center(SIC)를 설립하였습니다. 삼정KPMG SIC는 스타트업들이 향후 자본시장 진입 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적정기업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전략적 회계 · 재무 · 세무, 성장전략 및 자금조달, 해외진출자문, 기업간 협력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의 보다 견실하고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Setting up For Success”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스타트업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5가지 항목과 스타트업 관련 주요 기관 및 웹사이트 등 유용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경영 전 과정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기를 바라며, 삼정KPMG는 한국 Start up · 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성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 태 / CEO

삼정KPMG



목 차

Section 1. 법인설립과 재무운영	5
1. 적합한 회사 형태 결정	7
2. 브랜드 형성	20
3. 회계 업무 수행 방법	23
4. 재무 모델 정립	32
5. 사업계획서 작성	35
6. 운전자본 관리	40
Section 2. 인재영입과 보상	43
1. 인재의 영입	45
2. 인재에 대한 보상	53
3. 외국인 인재 채용	58
4. 직원 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60
5. 스타트업이 활용 가능한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	65
Section 3. 자금조달	67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	69
2. 펀딩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106
Section 4. 정부정책과 세금	111
1. 법인세에 대한 이해	113
2.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	118
3. 기타의 세금의무	122
4.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123
5. 감사(Audit)에 대한 이해	126
Section 5. 무형자산 및 지적재산권	129
1.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필요성	131
2. 지식재산권 유형	134
3. 스타트업에 유용한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제도	151
Section 6. 유용한 정보	159
1. 스타트업 관련 주요 기관 리스트	161
2. 스타트업 관련 유용한 사이트 리스트	165
◎ SIC 소개	166

Section 1



Corporate Establishment and Financial Operations

법인설립과 재무운영

Corporate Establishment and Financial Operations

- 01 적합한 회사 형태 결정
- 02 브랜드 형성
- 03 회계 업무 수행 방법
- 04 재무 모델 정립
- 05 사업계획서 작성
- 06 운전자본 관리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사업 성공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매일 관리해야 하는 많은 재무적 이슈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적절한 회사 형태를 결정하고 설립하고, 거래 발생시 적절히 회계 처리를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창업자가 내리는 재무적 의사 결정이 미래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1**적합한 회사 형태 결정****1) 회사 형태 구분**

회사 설립의 형태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사업의 주체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집니다. 상법 제 170조에 따르면 ‘법인’의 형태는 다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 종류로 나눠집니다. 각 형태에 대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명회사

출자자의 책임이 무한(연대책임)하므로 사원이 모두 경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무한하다는 측면에서 개인사업과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 친족 중심 가족회사 등에 적합합니다.

(2)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혼합되어 운영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이 경영권을 가지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즉, 투자자가 변동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폐쇄성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유리한 회사 형태입니다.

(3) 유한책임회사

정부는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LLC”)와 유사한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라는 형태를 허용했습니다.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적 형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법인 형태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법상 회사 중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출자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며, 경영은 ‘이사’라는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권한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경영 집행에 관한 결정은 ‘이사’들의 모임인 이사회에서 이뤄집니다) 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우며, 신주 발행 및 사채 발행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는 정관(*) 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사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주식회사와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정관: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창업자는 상기의 형태 중 업종, 고용, 성장성 등의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스타트업 창업 시 활용 빈도가 극히 낮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논외로 하고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법인 형태 결정 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회사 형태별 비교

(1) 개인사업자 vs 주식회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즉, 사업 자체가 대표자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가 무한책임을 지며 모든 성과는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적용되며 사업소득이란 이름으로 대표자 명의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때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도 당연히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출자자인 주주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집니다. 사업성과는 법인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법인세란 이름으로 법인 명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주주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은 별개이며 법인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주주는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 납부)으로 배분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는 법인에 귀속되며 출자자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집행업무를 하는 자들을 이사라 합니다. 그 중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출자자와 대표이사가 동일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경우 최대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의 대가로 급여(대표이사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납부)를 수령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주요 차이점을 표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설립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단,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설립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절차는 개인사업자등록에 비해 복잡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음
설립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설립비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세, 교육세 등 별도의 설립비용 - 법무사 등의 전문가가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 비용 발생
책임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의 무한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한도 내에서만 책임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주주총회 등 상법상 기관에서 결정
이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하는 손익은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 되므로 대표자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에게 귀속되고 주주에게는 배당의 형태로 이익이 배분됨
자금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명의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명의의 통장이 별도 개설되어야 하며 개인이 법인의 통장에서 임의 인출 불가 - 임의 인출 시 배임, 횡령 혐의가 제기될 수 있음
대표자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불인정(성립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인정
세금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6% ~ 38% (5단계 누진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 10% ~ 22% (3단계 누진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 10%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 금융기관 거래에 유리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변경 시에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세무처리가 비교적 간편 -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세무처리가 비교적 복잡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회사의 지속 성장이 목표인 경우에 보다 적합 - 법률상 요구사항이 많음

(2)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책임소재	- 불입자본금 내 유한책임	- 불입출자금 내 유한책임
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 사원총회, 이사, 감사(단, 감사는 없어도 됨)
자금조달	-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 자본금의 증가는 정관 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회사채 발행은 불가
외부감사여부	-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외부감사 대상임	- 외부감사 대상 아님(*)
지분양도	- 제한이 없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제한이 없으나 정관 변경으로 제한 가능
상장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2016년 9월 정부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유한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향후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 회사 형태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4가지

회사 형태를 결정할 때는 아래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책임

만약 당신이 주식회사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이라면 사업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은 투자한 규모만큼 부여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부분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거버넌스와 운영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를 선택한 경우 유한책임이 제공되는 대신에 회사의 관리 · 운영상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에 대해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각종 공시를 해야 하는 등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장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노출되므로 상장 전보다 요구되는 사항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정관 등에 명시한 공식적인 근본규칙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이사와 주주들의 활동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사와 주주들이 동일한 사람들인 경우 실제 그들의 활동과 책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 리스크 및 지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 이사들과 주주들의 의사 결정은 적합한 양식의 회의록이나 결의안을 통해 문서화 되어야 하고 장부 혹은 기타 회사 문서들은 꾸준히 업데이트 해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법령, 각종 문서의 기록 및 관리, 운영절차 등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행한 업무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ex.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무효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절차 · 행정업무 · 규제사항들이 주식회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설립 시 사원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를 1인만 두어도 됩니다. 이사들의 모임인 이사회라는 것이 없으며 이사 자체가 하나의 단독기관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게다가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주식회사 중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한회사 설립과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또 외부의 시선에 덜 신경 써도 됩니다. 현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재무제표 공시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한회사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 없거나 애초에 초기 자본이 충분한 경우 적합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계사들의 집단인 회계법인 같은 경우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됩니다. 외국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을 만들 경우에도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자본이 충분하므로 굳이 향후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나 공시 등의 의무가 없어 외부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운영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비용

설립 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록 업무 등 법적 문서 작성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 등 법률 조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때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운영 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기업의 형태를 선택 시, 상당한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 현재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니고 재무제표 공시의 의무가 없어 그와 관련한 외부감사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정부지원금, 정책자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추세입니다.

(4) 추가 투자 및 Exit

주식회사의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 투자자를 모으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입니다. 신주 발행이나 사채 발행 방법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회사가 성장하여 대형화가 되는 경우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회사가 성장해 상장될 경우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큰 매력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한 편이 아닙니다. 외부 투자자들을 모으기에 적합한 구조가 아닙니다. 자본금의 증가는 정관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사원은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의 변경을 통해 주식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형태별 설립 절차

(1)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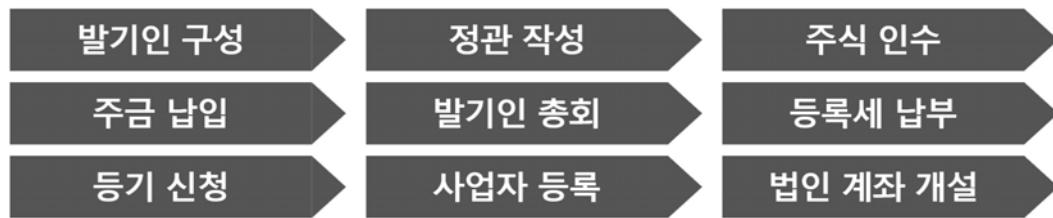
I. 설립방법

기본적으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http://www.startbiz.go.kr/>)에서 법인설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 비교적 각 절차가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생소한 법률 용어, 처음 보는 문서들이 설립 절차를 복잡해 보이게 합니다만 사실 법인설립 절차는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인을 혼자 설립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설립대행업체’들이 있으니 대행을 원하시면 이 업체 중 하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행업체에 그냥 맡겨버리게 되면 창업자의 의도와 다르게 가거나 혹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대행업체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설립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II. 설립절차

발기 설립을 기본으로 하여 설명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발행 주식 1주 이상을 반드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 자신을 발기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창업을 하면 발기인이 2명이 되겠습니다.

▶ 정관 작성

아래 사항들은 설립 및 조직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정관에 반드시 기재(절대적 기재사항)되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미리 생각하고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10억 미만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목적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회사는 등록된 사업의 목적에 한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당장 영위 할 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진행할 내용까지 감안하여 등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등록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통계청의 통계분류 포털(*)에서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

〈2〉 상호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반드시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를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 표기 원칙은 한글표기입니다. 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기는 한글로 하여야 합

니다. 상호 결정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 들어 가셔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유사 상호의 존재를 검색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금 규모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0원 이상의 자본금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X 액면주식 1주의 금액)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100원으로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자금소요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자금조달 시점까지의 필요자본액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관련법상 별도로 최소 자본금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국내외 여행업 : 자본금 기준 1억원)

또한 회사 설립 시에는 자본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도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향후 투자유치계획에 따른 발행할 주식 수를 계산해 본 후 보다 여유 있게 그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향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의 개최, 변경 등기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니 설립 시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본점 소재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변경 시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처음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해서 해당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해야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법인 설립 후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사전에 전달해야 합니다.

〈5〉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식회사는 정관에 공고를 할 관보 또는 특정한 시사 일간지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ex)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000.000>)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한다.

〈6〉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지의 주소도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식 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합니다.

▶ 주금 납입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은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대표 발기인의 시중은행 통장에 입금한 후 "잔고증명원"을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면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10억 미만 발기 설립 시에는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발기인 총회

〈1〉 임원선임 및 이사 및 감사의 조사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 때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1인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선출된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인 회사 설립의 경우 전원이 발기인이므로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증은 통상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발기인 외에 지분을 가지지 않은 1명의 이사 또는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설립 시 필요한 최소한의 임원은 사내이사 1인(100% 지분 소유), 감사 혹은 사내이사(지분 없음) 1인이 되겠습니다.

〈2〉 발기인 총회 의사록 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등록세 납부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구·구청 세무과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사본 1부를 제출하고 및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자본금의 액수와 본점소재지의 위치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등록세	교육세
기본세율	자본금 × 0.4%	등록세 × 20%

등록세의 최소 납부금액은 112,500원입니다. 즉, 자본금이 28,125,000원 이하인 경우 등록세는 항상 112,500원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 수원시 등 과밀억제 권역(*)으로 설정된 곳의 경우에는 비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3배의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조 및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수입증지, 법인 인감 비용 등이 있습니다.

▶ 등기 신청

법인설립등기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인 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등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 첨부 서류: 인감, 개인신고서,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주식 발행사항 보고서, 주식 인수증,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법인등록면허세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등기소에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대법원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등기신청 사건 처리현황)을 선택하고 서류를 접수하였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한 후 법인 종류와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하셔서 등기 완료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소를 한 번 더 방문하여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등기소 내의 무인 발급기를 통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넉넉히 발부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하려 가시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명의를 법인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만, 허가 대상 사업의 업종을 등록하실 때에는 관련 허가/등록/신고필증 등 업무가 우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업종과 사업장 상황 등에 따라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기도 하지만 사업장 실사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등록이 완료되기도 합니다

〈영리법인 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영리법인(본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 7. 자금출처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통장소 영위자 8.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사업자등록)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 (www.4insure.or.kr)에 방문하셔서 사업장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법인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후 은행으로 가셔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처음으로 할 일은 발기인 개인 명의 계좌에서 자본금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이후 모든 사업관련 거래는 당연히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은행 방문 전에 미리 연락을 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주주명세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참고]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 대한 상법상 특혜 규정

대부분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일 것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상법상 특혜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본금 10억 미만	자본금 10억 이상	상법 규정
이사 감사 선정	이사 1인 또는 2인, 감사는 없어도 됨	이사 3명, 감사 1명	제 383조 제 409조
발기 설립 시 정관 효력 발생요건	발기인의 기명날인	공증인의 인증	제 292조
발기 설립 시 자본금 납입증명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보관금액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	제 318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소집통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	
주주총회 서면결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서면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봄.	해당사항 없음	제 363조

(2) 개인사업자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http://www.startbiz.go.kr/>)에서 국세청 개인사업자 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I. 업종코드 확인

업종마다 고유 코드가 존재합니다.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유 업종코드 검색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사업의 코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웹사이트: http://www.nts.go.kr/cal/cal_04_01.asp#none

II. 임대차계약서 준비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의 경우에도 외부신뢰도를 감안하여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지 않고 외부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때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III.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챙기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개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종장소 영위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사업자등록)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IV. 사업자 등록

작성한 서류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 할 곳의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홈택스 공인인증’ 가입과 ‘사업장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브랜드 형성

브랜드는 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고객, 투자자 그리고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브랜드 형성을 하는 것은 단순히 브랜드 명을 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로고, 슬로건, 웹사이트 까지 모두 브랜드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브랜드는 제품, 직원, 서비스 간 다양한 상호작용 들을 통해 형성되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확립이 잘 된 좋은 제품들은 시장 내에서 높은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초기에 강력한 브랜드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형성을 위해서 아래 사항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표 및 미션 정의

브랜드는 회사가 시장에 나오기 훨씬 이전에 회사의 문화, 가치, 사고방식 등을 바탕으로 내부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즉, 브랜드 형성은 회사의 목표와 미션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와 미션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표란 스타트업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공표입니다. 하나의 목표 아래 직원들을 단합시켜 각자 일에 대한 긍정적 동기부여를 주며, 미션과 브랜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미션은 스타트업이 무엇을 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외부적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미션을 잘 정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글로벌 탑 기업들의 목표와 미션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Google의 미션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미션에 내포된 Google의 목표는 ‘정보 공유’ 입니다.
- McDonald의 미션은 ‘가장 빠른 서비스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을 경험 하게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최고’란 뛰어난 품질, 서비스, 위생 및 가치를 의미하며 모든 고객들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션에 내포된 McDonald의 목표는 ‘고객들을 웃게 만드는 것’ 입니다.

2) 브랜드 차별화

시장 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경쟁자들과 얼마나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력한 목표와 미션이 세워져 있다면 시장 내 경쟁자 대비 자사의 차별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시장 내 수요와 무관한 차별화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는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브랜드명 선정

좋은 제품, 훌륭한 고객 경험, 강력한 브랜드 메시지는 회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훌륭한 브랜드명을 선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기 쉽고 긍정적인 의미를 유발하는 짧은 브랜드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쉽고 읽기가 용이해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션 및 제품들과 연관된 이름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정 시 반드시 상표권 DB를 검색하셔서 선호하는 이름의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시각적 브랜드 정체성 형성

시각적 브랜드 정체성은 일관된 성격을 부여하는 시각적 요소들을 표현하고 구성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아래와 같은 시각적 요소들에 일관된 시각적 브랜드 정체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시각적 요소

로고, 편지지/레터헤드, 광고 브로셔 및 영업자료, 발표 템플릿, 슬로건, 제품 포장지, 웹사이트 및 디지털/모바일 페이지, 명함 등

시각적 브랜드 정체성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브랜드 성격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룩앤팔 및 디자인 속성들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Whole Food’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합시다. 회사의 로고를 초록색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신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 이 표현은 브랜드가 약속하는 ‘자연 친화적이고 유기농 음식을 제공’ 한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시각적 브랜드 요소들을 일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스타일 가이드 제작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로고, 색채 배합, 폰트 및 슬로건 등 시각적 요소들이 정의되어야 하며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5)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브랜드 형성

브랜딩은 로고와 슬로건 그 이상입니다. 웹사이트 내 컨텐츠를 읽는 것에서부터 영업사원과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고객과의 모든 상호작용이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고객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브랜드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화장품 기업인 ‘Lush’의 경우, 고객들에게 신선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들을 이용하여 좋은 제품을 선보인다는 브랜드 차원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Lush’ 매장에 들어가면 모든 제품들은 포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진열되어 있으며 각 제품들 옆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천연 재료 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방문 고객들에게 직접 제품 시연을 선보입니다. 이와 같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브랜드 차원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6) 일관성 유지

스타트업이 하는 모든 경영 활동은 진실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들이 스타트업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게시판 광고를 확인하거나, 서비스 및 제품과 관련된 메일을 읽거나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브랜드 경험이나 시각적인 정체성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회계 업무 수행 방법

회사는 재무 거래들을 정확하고 꾸준하게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장부 기입 또는 부기(Bookkeeping)’라고 합니다. 정확한 장부 기입에 따른 체계적인 회계기록이 있어야만 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1) 장부 기입 혹은 부기(Bookkeeping)

‘장부기입 또는 부기(Bookkeeping)’란 기업의 재무 거래 및 평가 내역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이는 구매, 판매, 비용지급, 금융상품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장부 기입에 따른 회계기록은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부 기입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납부 시 장부 기입 작업은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장부 기입 작업을 통해 완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세무조정 수행 후 법인세가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기초가 됩니다.

투자 유치 시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적시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미 정리계정 (가수금, 가지급금 등) 등이 생기며, 엉뚱한 계정(Account)이 사용되어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 되었을 것 입니다. 이런 재무제표를 실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할 것이며 이는 투자금액의 감소나 심하면 투자 유치 취소로 이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은 투자 유치의 첫걸음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사업연도 말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4월 30일까지 선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규모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IPO 예정법인)

회사 관리 · 운영의 기본입니다. 예상 재무제표와 실제 재무제표의 비교 · 분석을 통해서 실제 차이와 예상치의 차이를 향후 회사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부문별 성과 확인 및 부서별 성과급 지급 등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손익 계정별 증감 분석을 통해 절감되어야 할 비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회사와의 재무비율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비교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판단 또한 가능합니다. 이처럼 재무제표는 회사 관리 · 운영의 기본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 정확한 부기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회계 업무 종류

보통의 스타트업은 회계, 세무, 자금 업무 등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빈도
회계 - 회계기준 & 경비처리 기준 작성 점검 - 거래 내역 기입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인) - 채권채무 잔액 관리 - 재무제표 작성	- 최초 시점 / 수시 업데이트 - 하루 단위 / 주 단위 - 월 단위 - 연 단위 (또는 필요에 따라)
세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납부 - 소득세 원천징수 - 지방세 신고납부	- 분기 단위 - 반기 단위 / 연 단위 - 월 단위 - 지방세에 따라 다름
자금 - 자금 집행 (고지서 금액 납부, 급여 지급 등) - 자금조달 (차입, 사채발행, 신주발행) - 손익분석 및 실적보고 - 자금 소요계획 작성 및 업데이트 - 법인인감 관리 - 법인카드 관리 - 채권 추심	- 수시 - 발생시 - 월 단위 / 분기 단위 - 월 단위 / 분기 단위 - 수시 - 월 단위 / 수시 - 월 단위

[참고] 사업 초기 CEO 자체적인 회계업무 수행에 대한 의견

사업 초기에 회계 업무를 혼자 해보는 것은 꽤 좋은 방법입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회계 전문가가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회계 기준, 세무 기준, 기타 법률적 이슈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므로 왜곡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을 과대 또는 과소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회계사에게 회계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아웃 소싱을 통해 법규 및 회계기준 등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자칫하면 빠질 수도 있었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사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모든 회계사가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성장하는 경우 아웃소싱을 통한 회계 업무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이 성장하고 안정화가 된 후부터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 일체를 내재화 해야 할 것이며, Finance Controller(FC), 최고 재무 책임자(CFO), 각기 다른 회계·세무·재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재무제표

(1) 정의

재무제표란 ‘기업 경영 활동에 따른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따라 표시한 재무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보고’를 위해서 작성되며,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재무제표의 종류

I. 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자산/부채/자본)를 나타내는 보고서

II. 포괄손익계산서

회계기간 동안의 재무성과(수익/비용)를 나타내는 보고서

III. 자본변동표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화를 구성내역 별로 나타내는 보고서

IV. 현금흐름표

회계기간 동안의 영업/투자/재무 활동 별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

V. 주석

상기 4가지 재무제표의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충자료

(3)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며, 성과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각 요소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자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정의)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항목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인식한다.

(예시) 매출채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산이 됩니다.

과거의 외상 매출 거래로 인해 기업은 미래에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해당
(과거사건의 결과)
채권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약정된 기간에 현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함)

이와 같은 정의를 충족하는 형태는 현금, 예금, 매출채권, 투자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II. 부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정의)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현재의무와 미래의 약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항목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인식한다.

(예시) 매입채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채가 됩니다.

과거의 외상 매입 거래로 인해 기업은 미래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고
 (과거사건의 결과) (대가 지급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의무)
그 대가로 약정된 기간에 현금이 유출 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정의를 충족하는 형태는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선수금, 예수금 등이 있습니다.

III. 자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정의)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기업 전체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정의를 충족하는 형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IV. 수익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정의)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예시) 매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익이 됩니다.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 동안에 매출로 인해 매출채권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특정 회계기간) (자산의 증가)
이익잉여금이 증가됩니다.
 (자본의 증가)

이와 같은 정의를 충족하는 형태는 매출, 이자수익, 배당수익, 유무형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임대수익 등이 있습니다.

V. 비용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정의)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예시) 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용이 됩니다.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 동안에 급여로 인해 현금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특정 회계기간) (자산의 유출)
이익잉여금이 감소됩니다.
(자본의 감소)

이와 같은 정의를 충족하는 형태는 매출원가,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광고선전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 연구비, 이자비용, 유무형자산 처분손실, 법인세비용 등이 있습니다.

(4)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I. 발생주의 회계 처리

회계처리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주의 회계처리에서는 실제로 현금 유출입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발생주의 회계처리에서는 현금 유출입과 관계없이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사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법을 내부용으로 사용하며 외부에 공개할 연 단위 재무제표를 준비할 때에는 발생주의 회계 처리 방법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회계 처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에는 반드시 발생주의 회계 처리 방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참고] 보충적 자료인 주석을 제외한 4가지(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현금주의 방법이 적용된 재무제표입니다. 현금흐름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처리 및 결산 작업을 통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현금주의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 완성되게 됩니다.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프리랜서 개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시간당 3만원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는 12월 달에 40시간 일을 하였지만 비용 지급은 익년 1월 20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처리 기준에 따라 12월말 시점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비용의 지급이 익년 1월에 일어났으므로 12월 말 시점 손익계산서 상에는 아무런 회계처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비용의 지급은 익년 1월에 일어났지만 12월에 개발자가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12월 말 시점의 손익계산서상에는 120만원의 상당의 비용과 그에 상당하는 부채가 계상되게 됩니다.

II. 수익 · 비용 대응 원칙

비용은 발생한 비용과 특정 수익 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포괄적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 가능한 경우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를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즉, 한 기간 내에 당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다면 자산 매입 비용과 해당 자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매칭(Period Matching)시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활동을 위해 태블릿을 구매했을 경우 태블릿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발생하는 특정 수익과 태블릿 사용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태블릿 구매가 태블릿의 사용기간인 2년 동안 수익창출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구매에 든 초기 비용은 태블릿을 이용하여 수익을 만들어낸 기간에 분산시켜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태블릿을 240만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합시다. 태블릿이 미래 매출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 하므로 회계 자산 계정에 유형자산이라고 기록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인 2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즉, 재무상태표에 태블릿을 자산으로 포함시키고 2년이라는 사용기간 동안 매월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처음 구매 했을 당시 발생한 240만원이 일시에 비용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0이 될 때까지 10만원씩 월 순익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이 회계상 이익이 어떤 회계 원칙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태블릿 구매 당시에는 240만원이 지출되지만 매월 회계상으로는 10만원씩 2년 동안 비용 반영되게 됩니다.

동 예시 형태의 비용 인식 방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며, 사용기간 동안 자산의 사용 분을 기간별로 비용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III. 자산성에 대한 고려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 될 가능성성이 높으며 그 항목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인식합니다.

자산 인식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품 개발을 위해 발생한 인건비, 시제품비 등의 개발비용은 개발 결과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처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판단을 요합니다.

기존 자산의 평가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처의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의 자산가액이 손상되었다고 간주하여 손상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인식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의 급격한 진부화로 인해 재고자산 가액이 손상되어 이를 제값에 팔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손상된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IV. 부채 정의를 충족시키는 사건에 대한 고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금액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현재 항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원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시설에 대해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인식합니다.

V. 자산 · 부채의 유동 · 비유동 구분

재무상태표상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및 부채를 유동으로 구별하여 표시하고 그 외의 경우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VI.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감에 대한 회계처리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혹은 분배)과 관련된 것은 수익과 비용이 아닙니다. 즉, 유상증자 · 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 치분, 배당 등 지분참여자와의 거래로 인해 자본이 증감하는 경우는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자본 내에서 직접 조정되는 사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VII. 회계와 세무의 차이에 대한 인지

회계와 세무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회계는 기업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 재무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반면 세무는 과세당국의 과세소득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확실히 구분된 분야입니다. 회계상 손익 인식 시기는 발생주의인 반면 세무의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세무기준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왜곡된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반드시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4) 회계기준

정해진 기준이 없어 회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다 다르다면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나 성과 등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이 회계기준입니다. 적용 받는 회계기준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상황에 따른 회계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기준	근거법률 등	의무적용대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조/시행령 제7조의2	1. 상장기업 :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예정법인 2. 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증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일반기업회계기준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조/시행령 제7조의2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장 1.3	외부감사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1. '상법 시행령' 제15조 3호 2. 중소기업회계기준 제1장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업

(*) 다만,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 가능한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재무 모델 정립

‘재무 모델 정립’라고 하면 큰 규모의 회사에서 대형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에나 필요한 업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재무 모델이란 ‘사업의 미래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재무도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자금소요계획, 자금 운용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며 각 계획에 따른 추정 재무제표가 산출 되도록 설계된 재무 도구(일반적으로 엑셀 템플릿)를 말합니다.

회사는 만들어진 재무 모델을 통해 상황 별(기본, 최고, 최악) 시나리오 분석, 미래 수익 대비 비용의 증감이 미치는 영향 예측, 새로운 투자 유치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확인, 유동성 부족 이전에 자금조달이 필요한 시점 예측 등 수많은 재무적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재무적 자료들은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나 IR 자료 작성 시 재무정보 부문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재무 모델 정립 시 우선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재무 모델을 만드는 목적 파악’입니다. 만약 투자자를 위한 모델이라면, 가장 쉬운 방법은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운전자본, 통화, 세금, 매출, 기간들을 포함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가정들을 취합합니다. 추후 해당 정보들을 변경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초 취합 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형태로 신중히 취합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과 부채 중 당신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은 무엇 입니까? 만약,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당신은 재무 모델에 관련 계약들과 부채 상환 우선 순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1) 간단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

(1) 분리(Separation)

입력물, 산출물, 계산 워크시트를 별도 구분을 하고 각 워크시트 별로 다른 명칭을 부여합니다. 이런 구분이 있어야 사용자들이 동 모델을 이해하고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메뉴얼	기본가정	매출계획	투자계획	자입계획	자금수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	------	------	------	------	-------	-------

입력물과 수식들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향후 가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식들이 어려우면 작성자조차도 수식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취합한 문서나 모델들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로그들을 보관하면서 문서화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 매뉴얼을 문서화해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입력물 셀에 색을 넣으면 입력해야 할 부분들을 구분하기 용이 할 것입니다.

매출계획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구분	A 부문						
	B 부문						

(2) 일관성(Consistency)

같은 타입의 셀들은 일정한 형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 높은 신뢰감을 주며 실제로도 적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워크시트에 걸쳐서 동일한 열에는 동일한 기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모든 행에는 동일한 수식을 넣습니다. 즉, 동일한 연도가 반영되어 있는 열이나 행에는 동일한 수식을 넣어야 합니다.

매출계획		D	E
구분		2015.01	2015.02
매출	A 부문	1,000	1,100
	B 부문	2,000	1,200
	TOTAL	3,000	2,300

A B	C	D	E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		2015.01	2015.02
매출액		3,000	2,300
매출원가		2,500	2,000

반드시 일관된 부호를 사용합니다. 수익, 자산, 현금 유입에는 (+) 부호를 사용하고 비용, 부채, 현금 유출에는 (-) 부호를 사용합니다.

(3) 선형성(Linearity)

수식을 넣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로 넣으시길 바랍니다. 모델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순환참조나 반복계산들은 넣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로 이어지는 링크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 드립니다. 숙련된 엑셀 운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링크들은 수많은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킵니다.

(4) 진실성(Integrity)

재무 모델을 통해서 현금흐름 추정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결국 최종 목적입니다. 다만, 결과물들은 회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항목 간 균형이 맞아야 하고 자본과 부채의 합이 자산과 일치해야 합니다. 임시방편의 숫자를 끼워 넣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추정 손익계산서		(백만원)	
항목	2015.01	2015.02	
매출액	3,000	2,300	
매출원가	2,500	2,000	
재료비(=A+B-C)	1,000	600	
노무비	700	750	
급여	600	650	
폐직급여	100	100	
경비	800	650	
특히후생비	200	200	
감가상각비	150	150	
수도광열비	80	80	
점대비	60	50	
광고선전비	40	70	
세금과금과	20	30	

추정 재무상태표		(백만원)	
	2015년	2016년	
자산			
유동자산	15,000	18,000	
활주자산	10,000	10,000	
재고자산	5,000	8,000	
비유동자산	25,000	28,000	
투자자산	-	-	
유형자산	20,000	22,000	
토지	10,000	10,000	
건물	10,000	12,000	
무형자산	5,000	5,000	
기타비유동자산	-	-	
자산 총계	40,000	46,000	
부채			
유동부채	30,000	32,000	
임기차입금	3,000	4,000	

데이터의 내부 일관성을 위해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정 시트와 다른 시트의 숫자를 대조, 합계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검증 수식을 만들어서 쉽게 에러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단순성(Simplicity)

모델을 단순화하고 수식을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복잡한 기능과 매크로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숨겨진 행과 열에 대해 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엑셀 내 행과 열을 숨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을 준비하다 보면 경영자의 생각이 조직화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은 한 순간 뚝딱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숫자, 다이어그램, 텍스트를 사용하여 가독성 좋게 표현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회사의 사업소개서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업 내용의 내부 공유, 예산계획의 수립, 정부지원자금의 유치, 외부 자금조달 및 투자 유치 그리고 심지어 인재 유치 시에도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아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 I. 내부 인력들이 사업의 비전, 목적, 방법론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I. 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II.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계획을 적절한 데이터와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면 쓸데없이 양이 늘어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투자자에게 첫 선을 보이는 목적의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핵심이 충실히 담겨 있으면서도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한 10~15 Page 정도의 짧은 사업계획서가 오히려 더 유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단 한번에 완성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략의 변경, 최근의 트렌드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뀔 것이므로 매주 매달 업데이트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구성 시 가장 자주 활용되는 항목들

(1) 사업의 목적

사업계획의 상세내용을 보여주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문제 인식 및 해결책 제시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이 회사가 인식한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출발점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해당 문제가 외부인들에게도 정말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공감시켜야 합니다. 그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해결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3) 시장과 제품(또는 서비스) 그리고 수익모델에 대한 설명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어떤 분야, 어떤 시장에 적합한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을 설명할 때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부인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당신의 시장 및 경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내 시장 및 경쟁사의 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통계 데이터들을 사용한다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한 자료여야 합니다. 각주에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시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I. 타겟 시장은 어디이며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 II. 추정하는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
- III. 시장에서 기업의 포지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다음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간단 명료한 표현이 필요하지만 독자가 기업의 경쟁력 있는 엣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의 타 제품과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떤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I.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의 강점, 잠재력은 무엇인가?
- II. 경쟁사는 어디이며 그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4)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익모델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 작업은 당신이 속한 시장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타겟 시장과 제품의 강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 후 가격, 광고, 프로모션, 고객 관리, 유통과 관련한 전략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뤄야 하는 핵심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제품 혹은 서비스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 II. 가격 책정 전략은 무엇인가?
- III. 사용할 유통채널들은 무엇인가?

(5) 팀 구성

팀 구성에 대해 어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즉, 핵심 구성원의 역량은 어떠한지, 어떤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업에 어떻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 현재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등 사업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역할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는 팀원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6) 재무 정보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현재 활동과 미래에 예상되는 활동들을 숫자로 표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재무정보가 아닌 제품에 대한 과신과 무리한 마케팅 전략만을 앞세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은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사업계획서에 근거 있는 미래 재무 추정 자료와 다양한 경영 시나리오들을 포함한다면 투자자들에게 기업 경영진의 높은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재무 모델 만들기’에서 설명한 대로 회사 상황에 맞는 재무 모델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를 활용해 보다 손쉽게 재무 정보 부문을 완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 정보들은 현재의 재무제표와 향후 3개년치의 추정현금흐름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입니다. 투자 유치 제안을 할 경우에는 타임라인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Exit 전략도 사업계획서에 추가하면 좋습니다.

(7) 운영 및 관리 계획

향후 기업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운영에 필요한 자본 및 비용’과 ‘인력계획’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 운영에 필요한 자본 및 비용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이것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조달되고 사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II. 인력계획

인력은 당신의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력은 스타트업이 지출하는 대부분의 비용이 급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력 계획(채용, 개편)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목차 구성 예시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인 세콰이어와 세계 3대 액셀러레이터 중 하나인 500 Startups이 제안한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콰이어 벤처캐피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 목차

- I. 설립 목적: 한 문장으로 쓰라
- II. 문제점
- III. 해결 방안
- IV. 왜 지금인가
- V. 마켓 사이즈
- VI. 경쟁업체
- VII. 생산품
- VIII. 수익모델
- IX. 팀
- X. 재정

(2) 500스타트업이 제안한 사업계획서 목차

티저 이미지를 보인 뒤 엘리베이터 피칭이 가능할 만큼 짧게 제작 필요

- I. 문제점
- II. 솔루션
- III. 마켓 사이즈
- IV. 비즈니스 모델

V. 회사만의 강점

VI. 경쟁업체

VII. 마케팅 계획

VIII. 경쟁자



6

운전자본 관리

운전자본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단기자본’을 말합니다.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운전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업의 핵심요소(뛰어난 기술, 아이템)와 무관하게 단지 경영관리 미숙으로 인한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매월 인건비, 임대비, 수도광열비(전기세, 수도세 등), 통신비 등의 관리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매 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기차입금을 빌린 경우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등을 지출해야 할 시점에 운전자본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필요한 자금 이상으로 여유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좋은 운전 자본 관리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운전자본 관리의 핵심은 ‘예산 관리’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충분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잠재적인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서 대응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현금 관리 방법이 돈이 어떻게 나가고 들어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중기적으로 현금흐름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러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실제치와 예상치에 대한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현금 유출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자본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재무 모델(앞서 설명한 ‘재무 모델 만들기’ 참고)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재무 사이클을 이해한 후에야 현재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목표를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금 흐름 개선 방법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 매출 후 대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대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면 이는 영업이 마지막까

지 완벽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매출부터 채권 대금의 회수 과정까지 철저히 관리되어야 완벽히 영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프로세스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핵심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상대방에게 거래명세서를 전송하고, 돈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채권 대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영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간은 길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 관리 시 기업으로 유입되는 현금 못지않게 유출되는 현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는 것은 기업이 많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금이 계획대로 회수·지급되는 이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매출액은 예상보다 적고 비용은 많으며, 매출채권은 늦게 회수되는 반면 지급해야 할 일자는 냉혹하리만치 정확히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시적 자금 공백 현상으로 우수한 기술과 비전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불 조건(credit term)이 현금 흐름에 주는 영향

고객과 지불 조건에 있어서 최대한 짧게 협상하는 것은 이상적인 현금흐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다만, 지불 조건은 고객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그들의 과거 내역을 기반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반면, 공급자들에게 금액을 지불할 때에는 당신이 사업에 필요한 현금을 가장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보다 긴 기간을 두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공급자들과 잘 협상하여 공급자에 대한 지불 조건을 고객의 지불 조건보다 길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들에게는 2달, 고객으로부터는 그보다 짧은 1달을 지불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공급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시점보다 1달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스타트업에게 항상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좋은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Section 2



Talent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인재영입과 보상

Talent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 01 인재의 영입
- 02 인재에 대한 보상
- 03 외국인 인재 채용
- 04 직원 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 05 스타트업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우수한 인재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길은 경영진의 인맥, 프로젝트 수행 중 스카우트, 전문가 활동 커뮤니티 또는 전문 채용 포털 공고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 뜻지않게 해당 인재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 역시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재 영입 초기 근로계약서의 작성부터 적절한 보상체계의 설정, 상호 계약의 해지 또는 퇴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입사에서 보상, 퇴사에 이르는 과정)을 아우르는 인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본 Section 2에서는 노동관계법규 상 법적인 기준을 따르고 동시에 해당 인재와 회사의 필요(needs)를 일치시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합니다.

1

인재의 영입

기업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해당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로 계약을 맺거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외에 추가적인 선택지로는 용역, 도급 회사 등을 통한 외주 근로자를 구하는 방법, 인턴,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지분 보유 직원(employee shareholders)이 있으나, 회사의 주요 업무를 맡기는 유형은 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본 가이드에서는 주로 활용하는 직원과 프리랜서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일반 근로자(이하 직원)

(1)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 수행’과 ‘임금’을 주고 받는 계약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지휘/감독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노동관계법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임금 지급, 휴게/휴일/휴가, 해고 등에 대하여 여러 제약조건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지시, 감독,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권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 활용에 있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필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 임금(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법의 서면명시)
- II.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과 교부
- III. 소정근로시간 명시 및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시간 범위 제한
- IV. (III)의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넘는 초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 지급(주당 12시간 한도)
- V.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지급
- VI.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VII.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 부여

- VIII.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IX. 임산부의 보호(출산 전후 휴가 부여, 임산부 시간외 근로 금지)
- X.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
- XI.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 XII. 해고 사유의 서면 통보
- XIII.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 차별 대우 금지

위와 같은 필수 사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사업주를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일부 항목(III, IV, V, VIII, XI, XII, XIII)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에는 5인 미만의 소수 인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5인 이상 기업에 비해 근로기준법의 규제사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한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해고 관련 서면통지 등의 규정에서 자유로운 점은 근로자 활용의 유연성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사업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근로자’ 옵션을 선택함에 따른 장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장소, 업무 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통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일하면서 출원한 지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조직 관리 면에서는 근로자들이 기업에 고용된 기간 동안 이들을 사내 문화, 조직 규율에 따라 움직이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안 면에서, 근로자들이 핵심 기술이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핵심 기술, 영업 기밀을 담당했던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둔 후에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핵심 영업 기밀 유출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업무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를 활용하고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경업금지약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성이 인정되지만, 지나치게 장기간, 무기한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경업금지약

정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 ①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목적, ② 근로자의 종전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③ 경업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④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효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4) ‘근로자’ 옵션을 선택함에 따른 단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업무의 완성도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고정되어 있어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곧 매월 발생하는 고정적 인건비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때문에 직원 채용 규모 결정 등에서 사업주는 항상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있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만 일을 시켜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한도(1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준수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러한 의무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는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설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장비, 시설 비용 외에도 직원들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4대 보험 외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사업주는 기타 노동관계 법규상 규율과 사내 인사고과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해 고나 임금체불 기타 고용 관련된 진정, 구제신청,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필요한 준비사항(근로계약서, 최저시급 이상 임금,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는 채용과 함께 직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과 판례상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일 당일 또는 해당일 이전 시점에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 계약의 작성과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분~시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 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 없음()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한 임금 설정에 있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내에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게시하거나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해당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액은 1,260,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하므로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맞는 최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확인: 최저임금 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신규채용 시 사업주는

채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직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허위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고의무 위반 횟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 1명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2) 프리랜서

(1) 프리랜서와 사업주의 관계

프리랜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직접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앞서 설명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외에는 근로자와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고용보험 자격 신고 등)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소위 ‘근로자성’ 인정을 놓고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형태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고 있으나, 법으로 명확하게 프리랜서-근로자 양자간의 경계를 구분 짓는 기준은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나오는 주요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프리랜서-근로자 여부를 결정 짓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판단 징표
① 업무내용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가
②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 사용자의 구체/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있는가
③ 근무시간/장소지정 및 구속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구속하는가
④ 업무의 대체성 유무	해당 업무를 업무 수행자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행케 할 수 있는가
⑤ 전속성	해당 사용자를 위해서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가
⑥ 비품부담/소유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사업주가 소유하고 제공하는가
⑦ 취업규칙(인사내규) 적용	사업장 내 취업규칙을 적용하는가
⑧ 보수책정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인가(시급 적용, 기본급 적용 등)
⑨ 사업 손실 부담주체	업무 진행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가
⑩ 4대보험 가입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만약 위 표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프리랜서로 인정받는 형태로 인재를 고용하여 업무를 추진할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일을 진행하는 방식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일의 추진 방식이나 기한의 독촉과 같은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와의 상호 계약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맡겨진 업무를 완수하면 됩니다
- II.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 의무, 소위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도록 즉각적인 지시와 수행이 가능한 반면, 프리랜서는 계약된 업무 외의 기타 업무 (예를 들어 추가적인 과업 발생 시 해당 과업, 부수적인 행정사무, 거래처 연락 등)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계약 외 업무의 즉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약 프리랜서에게 계약된 업무 외의 업무를 맡기고자 한다면, 이는 추가적인 계약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새로운 계약 책임하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III. 사업주가 맡긴 일의 완성을 위해 작업하는 방식(주로 시간과 장소)이나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프리랜서는 상당히 큰 재량을 갖습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통제력이 낮습니다. 일례로 직원과 비교할 때, 사업주는 직원에게 작업에 필요한 도구 (사무직의 경우 컴퓨터 등의 작업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본인이 구매한 작업 도구를 활용하고 본인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별다른 통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들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보다 적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프리랜서와의 관계는 민법 또는 상법 등에서 정한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때문에 프리랜서의 권리는 사업주와 프리랜서 상호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프리랜서’ 옵션을 선택함에 따른 장점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업무 추진 비용, 업무 소요 기간, 작업 시간 등에 대해 프리랜서와 비교적 자유롭게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최저시급, 근로시간 법정한도 등 법적 제약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프리랜서는 상호간 계약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접적인 고용 비용 외에 고용보험 가입, 고용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업무에 대한 대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정액 이상의 약정 금액을 당신이 프리랜서에게 요청한 업무가 마무리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과업의 완성과는 별개로 주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반하여 프리랜서는 업무의 완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 추진 상 인건비 비용 지출의 ‘시기적’ 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 정기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상당한 장점입니다.

프리랜서가 수행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업무의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들은 업무에 사용했던 장비나 자료들을 기업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보수를 받을 때 보수지급자가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들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득이 ‘계속적 · 반복적’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 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4.4%)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와 계약 체결 시 계약이 만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처리 업무의 완결여부에 대한 검토, 수정/보완 작업, 업무에 대한 계약 금액의 지급, 자료 제출 등)에 대해 합의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고용에 따른 법적,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해서 인력 활용의 유연성이 높은 장점을 갖습니다.

(4) ‘프리랜서’ 옵션을 선택함에 따른 단점

프리랜서가 근로자와 비교하여 장점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하나의 기업을 위해서만 일을 하지 않으며, 계약상 의무 외에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어서 업무 중 발생하는 추가 업무 수행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주가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추진 일정과 장소, 작업도구 등에서 프리랜서가 갖는 자율성을 감안하면 상업주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에 업무 중 일부가 완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특히, 프리랜서가 다른 기업과 일을 하는 기간이 겹칠 경우 이처럼 업무 미완성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직관리 면에서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 비하여 조직 충성도, 다른 직원들과의 자연스러운 협업이나 업무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의 성향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과업과 관련하여 기업 조직 내 부차적인 작업이나 장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보안 면에서도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는 이상 프리랜서는 사업주가 맡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획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 외에도 프리랜서가 여러 기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 기업의 정보나 과업 내용이 경쟁 기업들과 공유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5) 사업주가 프리랜서를 채용하는데 필요한 준비사항

사업주가 프리랜서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계약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에 앞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프리랜서를 기업이 직접 탐색하거나 관련 용역업체에 맡겨 인물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인물이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프리랜서나 용역 기업에게 계약의 기간 및 조건(과업 지시 내용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안하고 상대방의 직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 프리랜서가 진행할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 II . 급여
- III . 업무 데드라인
- IV . 프리랜서가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들의 세부 내용
- V . 보안이 필요한 정보, 지적재산권, 업무 종료에 대한 정보

이러한 내용 외에 당신은 필요한 경우 계약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상 사고 또는 클레임에 대비하여 프리랜서에게 보험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인재에 대한 보상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수한 인재의 유입과 외부 유출을 막고 업무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보상체계 설정은 어려운 일입니다. 적절한 보상체계의 설정은 동기부여와 직결되며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과도한 보상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인건비 운용 여력과 근로자의 만족도 증대, 동기부여라는 두 과제의 접점을 찾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보상설계

(1) 보상을 얼마나 줄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사업주는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회사 내 근로자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 목표 달성을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상당한 보상(최소한 동종업계에서 다른 근로자들보다는 많은 수준)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체계는 기업에 지원하는 인재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시장에서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울지, 더 훌륭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울지 고민하여 ‘보상의 격차(능력 또는 성과에 따른 보상 수준의 차이)’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개인 성과를 보상과 연결하는 방법과 기업 전체 성과를 보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양자 중 택일하거나 적절한 비율로 혼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업계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할 때 기대하는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우리 기업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 우수한 인재의 유입이 지체되거나 기존 직원들의 이직이 잦을 수 있으며 반면 보상이 과할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경제적 보상 외에도 휴가, 자기계발 기회 등의 복지 수준 등도 보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합니다. 때문에 스타트업 사업주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이 직무 수행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적 보상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의 아이템이 갖는 성장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직원이 공감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지 여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 본인의 전문성이 길러지는지 여부, 업무를 추진한 후에 충분한 휴가와 여가를 보장하는 것 등이 경제적 보상 외에 고려할 부분입니다.

(2) 보상 패키지에 지분을 포함해도 되는가?

스타트업들은 항상 제한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이나 지분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현금 보유량이 적을 때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지분을 제공하는 것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최대한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해야 하며, 최대한 여유 있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성급하게 결정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막아야 합니다.

(3)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스타트업에서 지분을 포함한 보상 패키지를 계획 중이라면,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비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제공해야 하는 패키지 비용

패키지 비용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와 고용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받을 수 있는 법인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 규정이 없는 과다한 보상이나, 직원 중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보상의 경우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II. 세무, 법률, 회계 관련 자문 비용

직원들에게 제공할 지분 계획 수립에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 전문가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일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비용의 일회성과 정기성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 되겠으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금액을 미래를 위한 초기 투자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III. 행정 비용

지분형식으로 지급되는 보상 계획과 관련하여 법률적, 세무적 내용 등을 검토하고, 직원들이 정확한 급여 및 지분을 올바른 형태로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든, 사업주 본인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든 일정한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주로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처리 영수증 관리, 4대 보험 신고 등의 간단한 사무행정부터 세무정산과 계좌 확인 및 이체 수수료 등의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회사 직원들이 보상 패키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보상 패키지 구성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직원들은 스타트업에서 업무를 하는데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상 프로그램이라 해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보상의 정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기대한 동기부여 등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설명, 예시 등을 통하여 확보 인력에게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직원들이 자발적 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사를 하는 경우 지분 처리문제(기업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 일정 조건 하에 반납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스타트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변화하는 경우 보상패키지 역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2) 스톡옵션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혁신 및 동기부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관련 규정은 회사가 일반기업인 경우와 상장 및 코스닥법인, 비상장 벤처기업인 경우 각각 조금씩 달라집니다. 스타트업이 비상장기업 혹은 벤처기업일 경우의 스톡옵션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비상장, 미등록)
부여대상	이사 · 감사 · 피용자	임 · 직원,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 · 기술지도사, 세무사 등) 지분 30% 이상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
부여한도	발생주식 10%이내	발행주식 50%이내
부여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위임 불가) * 결의사항 :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에서 정한 총 부여한도의 20%이내의 주식을 임 · 직원 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부여 받을 자의 명칭, 종류, 수의 사항은 이사회 위임 가능)
신고의무	별도의 신고의무 없음 (주권상장법인은 금감위 및 한국거래소에 신고의무 있음)	중소기업청에 신고하여야 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1) 정관근거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요건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나, 당해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부여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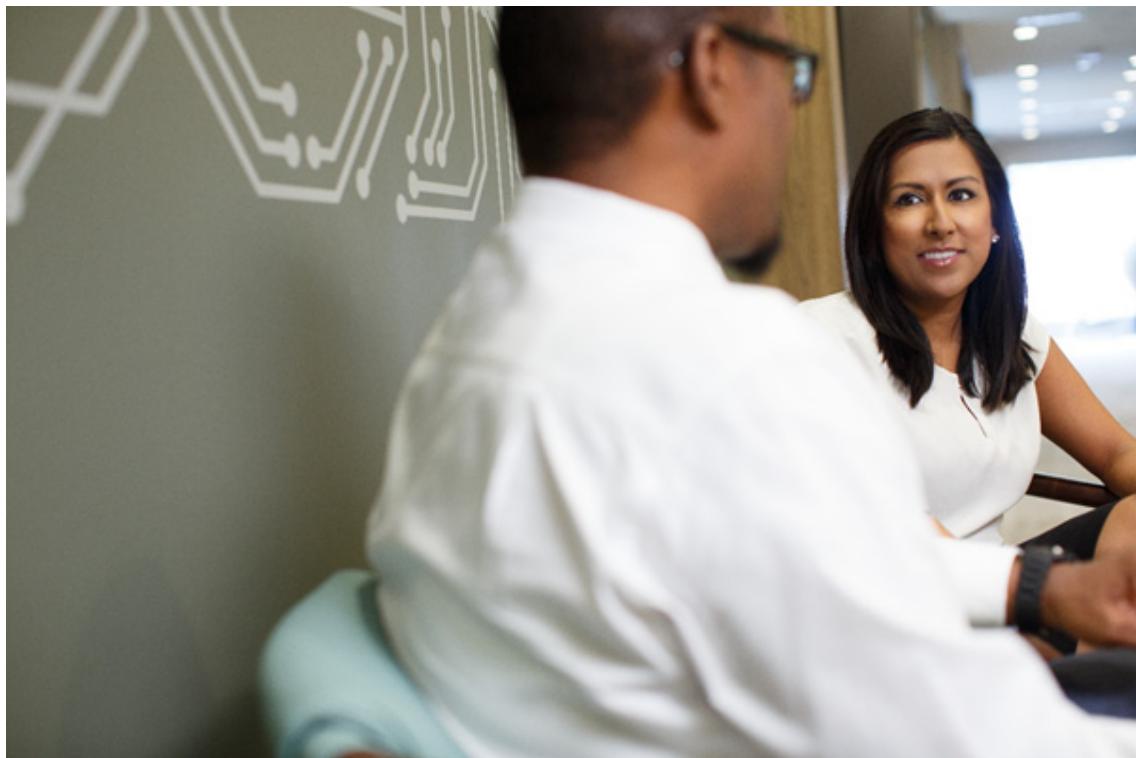
(3) 부여방법

스톡옵션 부여 유형에는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I.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II.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III.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4) 스톡옵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부터 정관에서 정한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사망, 정년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근무의 원칙은 지키되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면 되며, 보통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4년~5년 정도로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외국인 인재 채용

스타트업은 사업 필요상 외국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채용은 앞서 ‘인재의 영입’ 파트에서 설명한 근로기준법의 기본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외국인 직원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외에도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고용허가제’를 적용합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외국인의 비자 유형, 자격 등에 따라 고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직원 활용 시에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업주로서 외국인 고용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

국내에서 고용 허가가 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기업의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구인노력 기간 14일,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한 구인노력 시 7일)

구인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기능확인서를 발급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https://www.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규정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

최근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및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이후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만약 불법고용주로 적발되는 경우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비교적 자유롭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유형

일반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국내 거주 비자(F-2) 보유자
- (2) 재외 동포 비자(F-4) 보유자
- (3) 국내 영주 비자(F-5) 보유자
- (4) 결혼 이민 비자(F-6) 보유자

상기 4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업무 내용, 장소 등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직원 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사업주는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직원의 귀책사유 때문일 수도, 때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해고의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국내 노동관계법규 상 해고의 유형은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이러한 해고에 있어서도 절차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한 사실만으로 많게는 근로자 월 급여액의 4배~5배까지 보상해 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 다툼에 드는 비용(노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비 등)은 별도입니다. 결국 해고는 그 자체로 회사에 비용부담을 안길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 등의 제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상 해고 시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해고의 의의와 유형
- II. 해고가 가능한 사유(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 III. 해고의 시기 제한(해고 금지 기간, 해고의 사전 예고 시기)
- IV.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V. 해고 통지의 방법(언제,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가)
- VI. 부당한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한 직원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업주는 위와 같은 해고의 기본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거나 이해가 부족하여 ‘부당한’ 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구제절차에서 이길 경우 회사에서는 ‘임금상당액’(통상 2~3개월분 세전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자의 원직 복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당한’ 해고는 금전적으로나 조직관리 면에서나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해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해고의 의의와 유형

판례에 따르면,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②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직무상 일탈적인 ‘행태상 사유(귀책사유: 근무태도불량, 사업장 내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에 의한 해고를, ③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경영 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해고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이며 노동관계법상 해고의 사유와 시기, 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인 분쟁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사유

현행 법에서 ‘정당한’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결국 해고에 이르게 된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해고의 경우들을 꼽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I.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
- II.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
- III. 불성실한 근무(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
- IV. 업무명령, 인사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
- V.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
- VI. 횡령, 배임, 절도 및 중대한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 VII.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
- VIII.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 IX.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해서 무조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과연 ‘사회통념상’ 해고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고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해고의 시기 제한(해고 금지 기간, 해고의 사전 예고 시기)

해고에 있어서 첫째,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과 둘째, 해고를 사전에 예고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에는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그리고 그 후 30일 동안 ② 출산 전, 후 여성의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90일 범위 내)과 그 후 30일 동안 ③ 육아휴직 기간 세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금지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 계속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중 해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①, ②)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에 있어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해고 예고는 서면으로 함이 일반적이나 구두 통보나 공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해고 시기 등을 알 수 있다면 이 경우 역시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없어도 즉시해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I.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II.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혹, 30일전 해고예고만 하면 문제없다는 생각을 하는 고용주가 있지만, 해고예고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사유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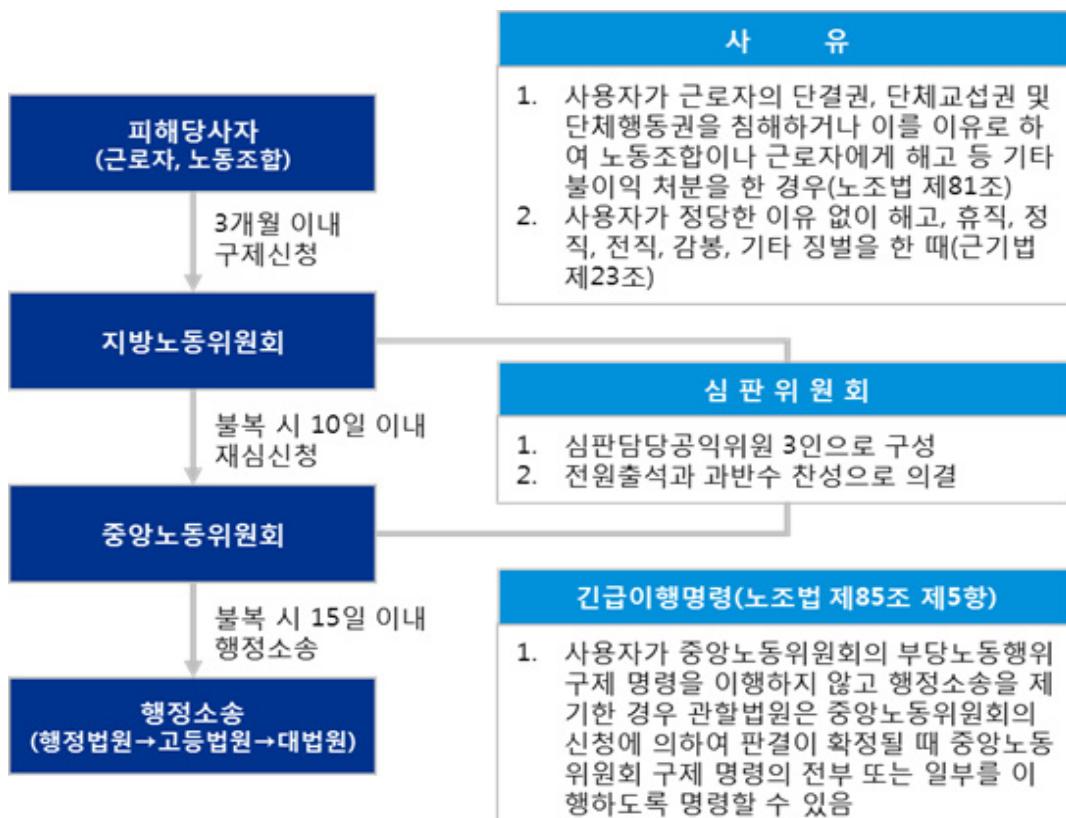
(5) 해고 통지의 방법(언제, 어떻게 통지하는가)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의 통지는 해고 당일에 해도 되며, 앞서 설명한 해고예고(30일전) 시기에 해고예고와 해고통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고 서면에는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어느 시점 부로 해고되는지 그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해고의 서면 통지 외에도 회사 취업규칙과 같은 내부 규정 상 해고의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인사위원회 개최 등) 이러한 절차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를 구두로 하는 경우라 해도 그 의사표시를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구두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두로 해고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을 부정받게 됩니다.



(6) 만약 부당한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한 직원이 구제받는 경우 절차(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참고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상술한 것과 같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① 사유, ② 시기, ③ 서면 통보 등 방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고용주가 해고를 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들에 대해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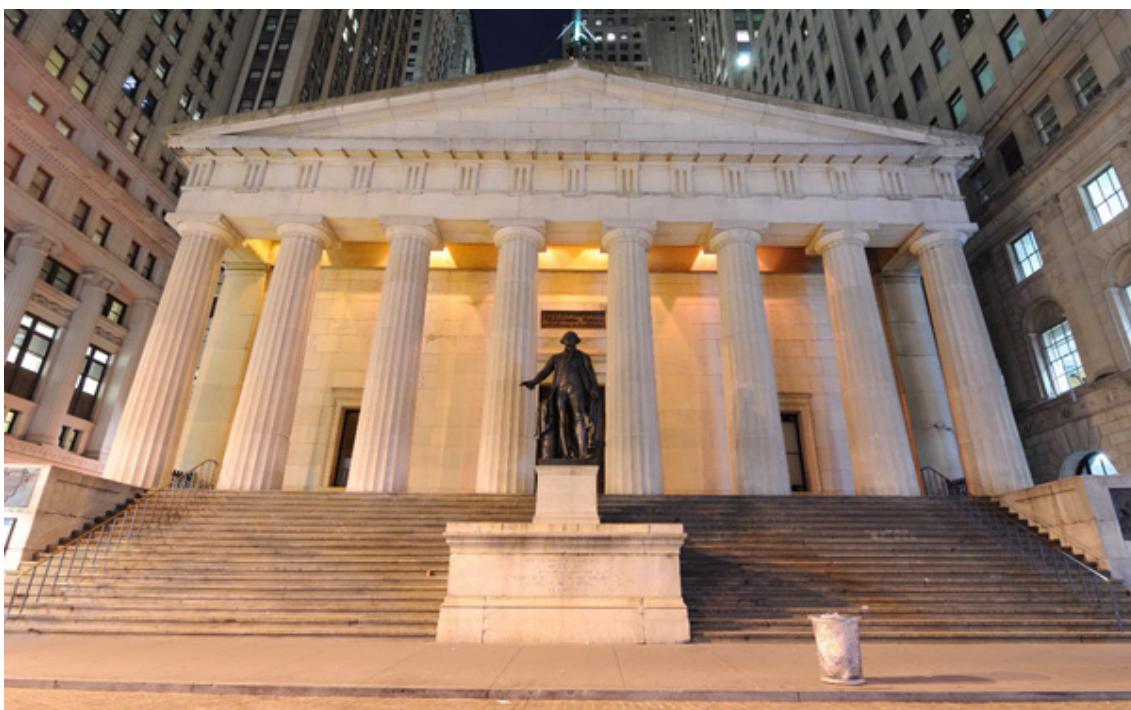
해고 관련 권리구제 과정에서 승리한 직원에게 고용주는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 300만원의 근로자를 해고하여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다면, 고용주는 결정이 있기까지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경우 900만 원의 월급(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를 원직 복직 시켜야 합니다. 구제 절차 중에 고용주와 직원 상호간의 화해 또는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구제 절차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화해 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원직 복직 없이 일정 금액의 지급으로 사건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5

스타트업이 활용 가능한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

스타트업과 같이 사업 아이템에 치중하는 기업의 경우 인건비 활용, 정부 지원사업 이용 등에 대한 정보 부족, 접근성 부족 등의 한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례들을 보면 주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몰라서 놓쳐온 인건비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 사업장 여건상 약간의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면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관련된 절차와 서류 작성이 익숙치 않아서 놓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처럼 놓치거나 간과하기 쉬운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은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 스타트업이 활용하기 좋은 사업은 고용창출사업과 고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고용창출사업은 세부적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정규직 전환지원사업이 있으며, 고용촉진 지원은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미 채용한 근로자를 정부에 신고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고용창출 즉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각 인건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 수준	관련 홈페이지	기타
취업 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연간 600만원~900만원/1인		
청년(장년) 인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청년(장년)인턴 풀에 등록하고 인턴 풀의 지원자를 채용한 경우	570만원(인턴 1인당 3개월간 지원 180만원) 정규직 전환 시 월 6개월간 추가로 지원(총 390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형: 주15시간 ~ 주30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1년 최대 1,080만원/1인	취업지원전산망 (www.work.go.kr), (www.ei.go.kr)	
	전환형: 기존 8시간 전일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전환	1년 최대 1,080만원 /1인		
정규직 전환지원	기간제 근로자, 파견 및 도급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년 최대 720만원/1인		5인 이상 사업장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기존 근로자 초과근로 감소 및 신규인력 채용, 설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2년 최대 2,160만 원/1인 인건비 지원, 설비 투자금 1,000만원/1인(신규채용), 설비투자 용자 - 비제조업: 1년 720만원, 설비 투자금 500만원/1인 (신규채용) 		

이상의 인건비 지원 사업 중에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사업(청년 인턴제, 정규직 전환 지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인력 규모에 맞게 회사에 적합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인력규모를 늘리고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한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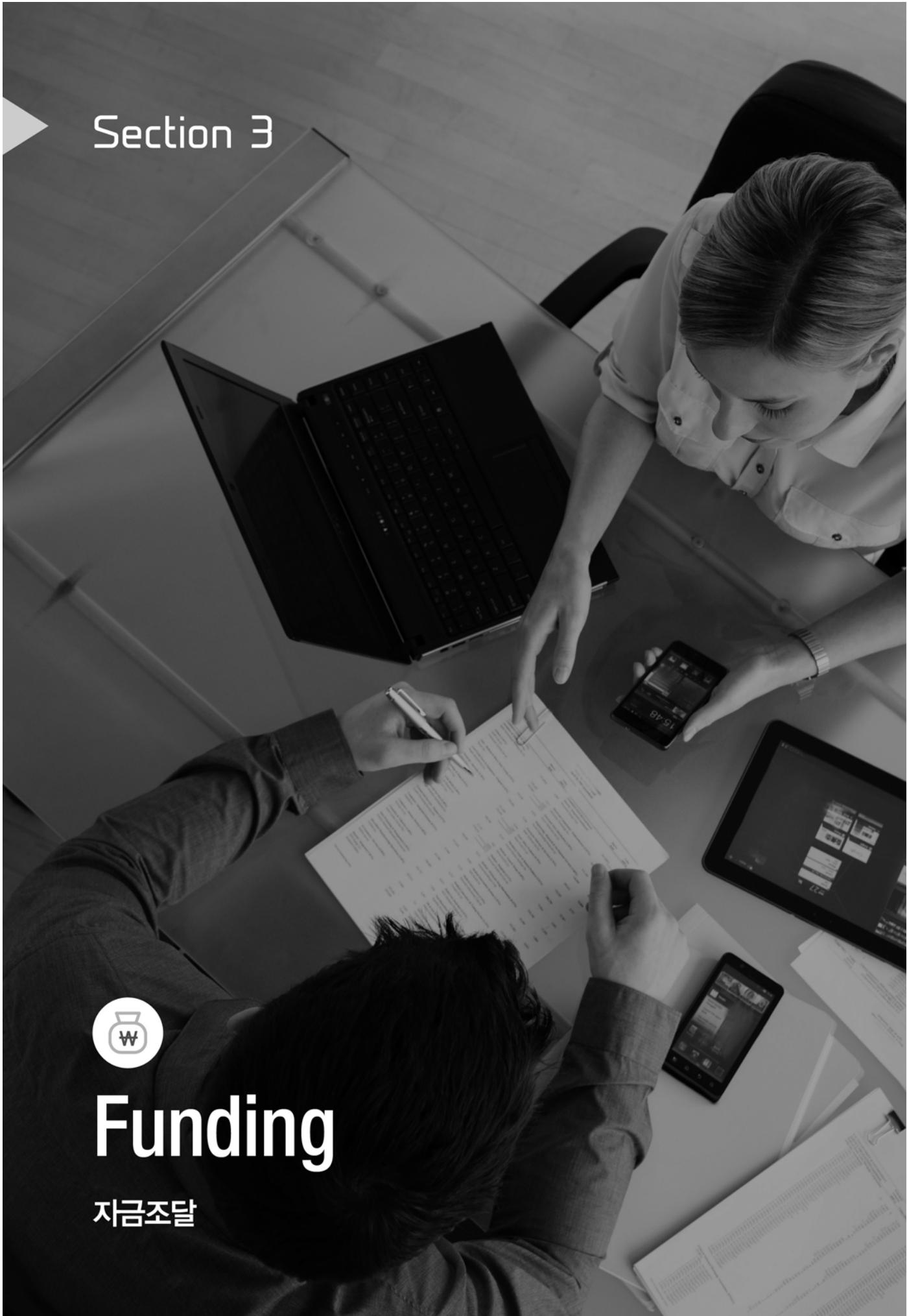
또한,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사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한 여러 서류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고용창출지원사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식 하에 지원금 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인력 운영 계획, 근무형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회사에 적합한 고용지원금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ection 3



Funding

자금조달



Funding

- 01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
- 02 펀딩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자금 조달에 대한 답은 은행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사업에 호감을 갖고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를 찾았다면 정부 역시 도움을 줄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에 대해 세금 경감 혜택을 주고, 스타트업들에게는 매칭투자나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들이 아이디어에 기반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다음 단계입니다.

적시적소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금 조달의 방법은 당좌대월, 대출, 에쿼티파이낸스(Equity Finance) 등 전통적인 방법들과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등의 새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당좌대월

당좌대월이란 흔히들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설하는 수시 입출금식 보통예금과 같이 예금금리가 없거나 극히 낮은 기업의 예금 중 하나를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동 계좌를 개설하고, 정기예금이나 증권을 담보로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한도 약정에 해당하는 당좌대월 계약을 은행과 체결합니다. 기업의 자금거래에는 수표나 어음이 종종 사용되는데 기업이 현금 대신에 당좌수표나 어음을 지급하고, 동 수표나 어음을 수령한 자는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동 만기일에는 당좌예금에 해당액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잔액이 부족할 경우 기업은 부도 처리가 됩니다. 이 때, 당좌대월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예금잔액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계약한 한도액까지 은행이 수표나 어음 대금을 지급하므로, 부도 상황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과 마찬가지로, 타 대출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대출 또는 차입

대출이라고 하면 흔히 은행대출을 연상하게 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은행대출 역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업 명의로 신용대출을 하고자 하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매출액과 자산·부채 현황뿐 아니라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만으로 대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 때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증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text{보증료} = \text{보증금액} \times \text{보증료율} \times \text{보증기간}/365$$

보증료율은 최저 0.5%에서 3%인데 보증상품의 종류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감면 · 우대 혜택이 있으므로 당해 스타트업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는 4대 창업육성분야(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 · 뿌리창업, 첨단 · 성장연계창업)의 경우 1억원 이내의 보증에 대해서는 1%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보증금액이 클수록, 보증기간이 길수록 보증료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1%의 낮은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유용한 혜택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의 대출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자금입니다. K-Startup(www.k-startup.go.kr/)에서는 매년 초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정책들을 한데 모아 “20XX년도 창업지원사업”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방에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들에 대한 창구를 단일화 함으로써 바쁜 스타트업들의 접근성을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창업기업지원 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을 예로 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 2.5%의 금리로 기업당 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6년, 운영자금은 최대 5년 만기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이와 유사한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이 최저금리 4%, 만기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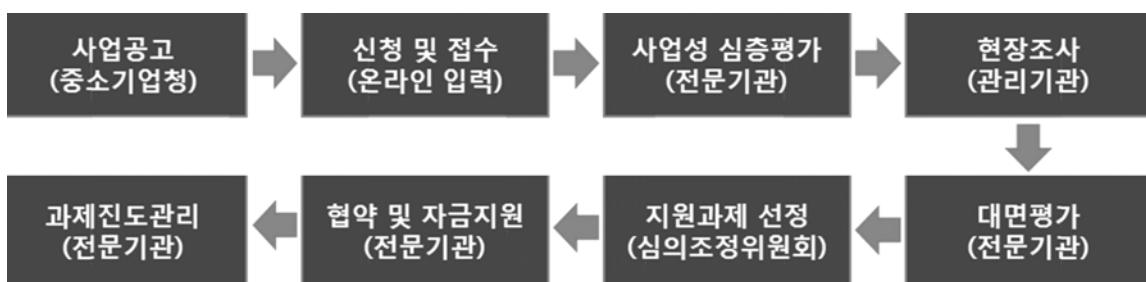


3) 국조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개발,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무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들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앞서 언급한 K-Startup의

“20XX년도 창업지원사업”이라는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서도 다양한 국가지원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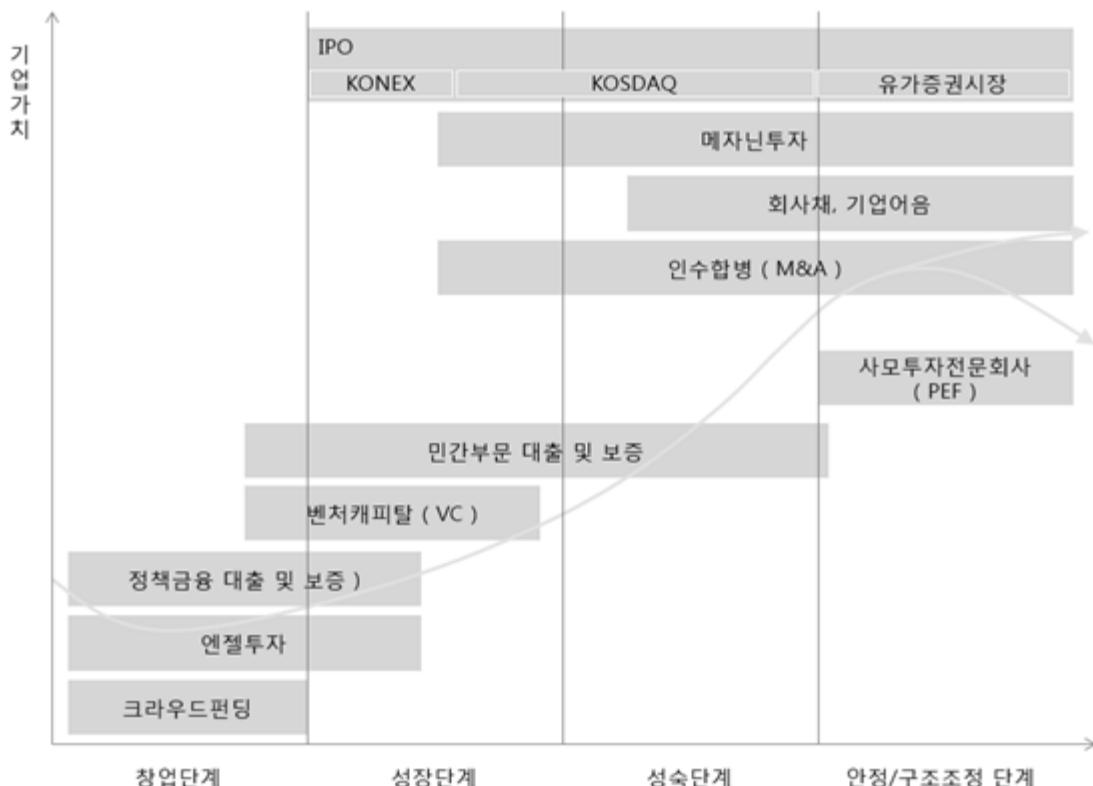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R&D 성공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적·도전적 과제들을 집중 발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연구 과제당 사업비의 65% 이하의 금액(2년 간 8억원 한도)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에는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시약구입비, 외주위탁연구비, 연구설비 구입비와 해외 기술의 조사 등을 위해 발생한 출장여비 등이 포함되며, 통상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각종 의무와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세부 내역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당해 스타트업에 가장 유리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에쿼티 파이낸스 :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유치

기업의 자금은 타인자본이라 불리는 부채(Debt)와, 자기자본으로 불리는 자본(Equity)으로 대별됩니다. 부채는 앞서 언급한 대출, 차입, 회사채 등이 해당하고, 자본은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메자닌 투자방식들은 부채와 자본이 복합된 형태입니다.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Debt Finance, 자본을 통한 것을 Equity Finance이라 합니다.

(1) 스타트업 파이낸싱 싸이클



출처: 금융위원회 ‘알기쉬운 크라우드펀딩’ p.7 KPMG수정

(2) 공모와 사모, 그리고 기업공개(IPO)

기업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모집의 폐쇄성에 따라 공모와 사모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란 공개모집의 준말로, 50인 초과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연관되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 상장(IPO)이란 폐쇄적인 기업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장 전에 반드시 공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 전 총발행주식의 30% 이상, 코스닥시장의 경우 20% 이상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권공모제도는 규제와 따라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소액의 투자유치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소 간소화된 형태로 ‘소액공모제도’가 있으며, 2015년에는 크라우드펀딩 중 증권투자형에 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반면, 사모란 다수의 일반인이 아니라 50인 이하의 특정 개인이나 금융기관, 단체 등에 주식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이해당사자 간 계약이고, 투자자가 기업의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 하므로 ‘공모제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제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절차들이 필요 없습니다. 엔젤투자자나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소수의 특정인만 참여하는 것이므로 사모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공모제도와 소액공모제도, 그리고 온라인소액투자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공모	소액공모	온라인 소액 투자 제도
기본개념 (공모발행 중개업무)	증권공모제도	증권공모제도의 일종 (기존 투자중개업자)	증권공모제도의 특칙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투자자의 수	다수	상대적으로 소수	다수
1인당 투자 금액	다양	통상 고액 (수 천 만원)	소액 (투자한도 有)
청약의 방법	주간 증권사를 통한 일방향적 청약신청	주간 증권사를 통한 일방향적 청약신청	펀딩포털상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청약결정
기업정보 제공방법	개방적 (증권신고서)	다소 폐쇄적 (소액공모서류)	개방적 (사업아이템 등을 창의적 방식으로 홍보)
중개업자의 역할	적극적 청약권유	적극적 청약권유	단순 중개

공모이면서 동시에 공모금액이 20억원(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공모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신고서는 금융위원회가 그 신고서를 수리한 날(형식상 요건과 첨부서류가 적정하게 구비된 경우 제출일에 수리된 것으로 봄)로부터 일정한 기간(주식의 경우 7~15일이며, 비상장법인은 15일이 적용됨)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때 투자자에게 기업내용 및 발행요령 등을 알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권유하는 문서입니다.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사업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 하므로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유가증권신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예시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2. 공모방법
 3. 공모가격 결정방법
 4.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2. 회사위험
 3. 기타위험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V. 자금의 사용목적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
 3. 자본금 변동사항
 4. 주식의 총수 등
 5. 의결권 현황
 6. 배당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 연결재무제표
 3. 연결재무제표 주석
 4. 재무제표
 5. 재무제표 주석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VI. 주주에 관한 사항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2. 임원의 보수 등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5개 항목에 통상 20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스타트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공모제도가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이 복잡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반해, 소액공모제도는 연간 20억원 미만의 공모 증자를 할 때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곧바로 증자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 실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은 위 유가증권신고서와 동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증권회사 등이 주간회사로 참여하는 기업실사와 금융감독원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엄격한 요건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소액공모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용이합니다.

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1. 영업활동기간	설립 후 3년 이상 등	해당사항 없음
2. 기업규모	상장예정주식 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등	1억원 이상
3. 주식분산요건	소액주주 소유비율이 25% 이상 등	해당사항 없음
4. 경영성과	1) 매출액: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2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 300억원 이상 2) 이익: 최근 사업연도 2억 이상이면서 최근 3개 사업연도 합계 50억 이상 등 3)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등 4) 기타 다양한 요건 존재	해당사항 없음
5. 질적 요건	영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등 다양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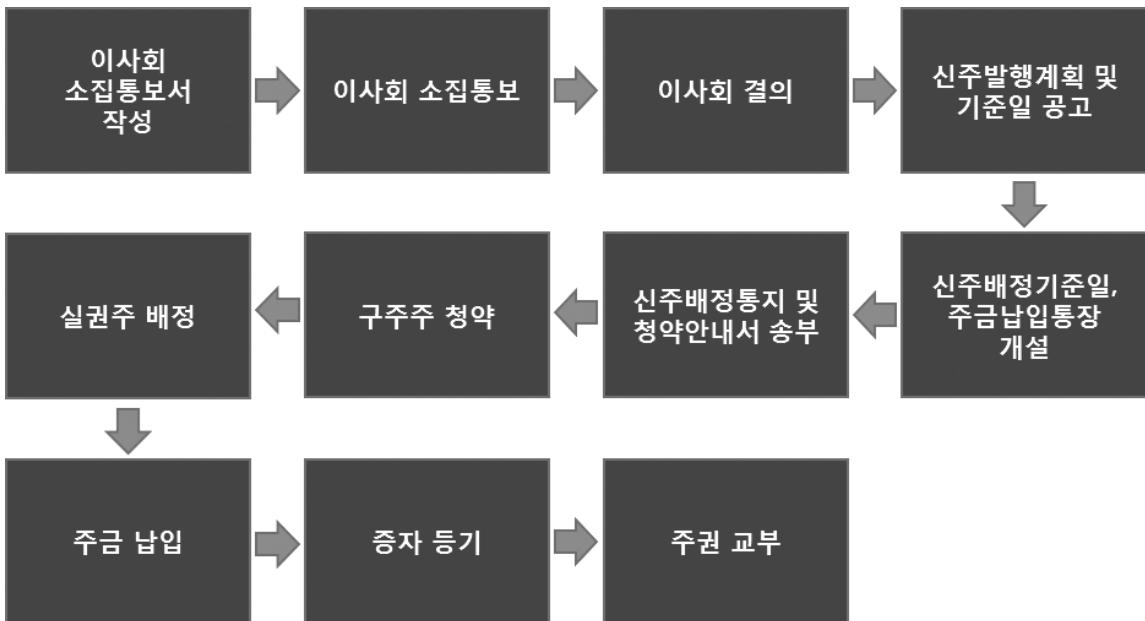
성장가능성 높은 스타트업들이 공모와 상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2016년 말, 상장·공모제도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장요건을 신설하고,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의 경우에는 적자 상태에서도 상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장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모제도의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 산정시 상장 주관사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예측 등의 절차 없이도 다양한 기법으로 공모가 산정을 가능케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상장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테슬라는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점, 일명 "테슬라요건"을 한국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3) 투자 유치 절차

투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발행예정주식 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주금납입 다음날

로부터 2주 이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당해 증자로 인해 정관에 기재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주의 고유 권리로써 기존 주주에게는 증자 시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거나, 납입을 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2개월여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주들로부터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규정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 및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동의를 얻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상기의 형식적인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치평가와 발행가액의 결정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데모데이나 IR을 통해 기업을 소개하고, VC나 엔젤투자자들을 만나 스타트업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구체적인 투자금액과 주식의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기업일 수록 액면가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개발이 완료된 기술에 따라 기업의 가치는 액면가 혹은 초기 투자액의 몇 배수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업가치평가 방법

I. 현금흐름할인법

전통적으로 기업가치평가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환원하여 평가하는 DCF(Discounted Cash Flow)법을 사용하나,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DCF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최소 5년)의 연도별 매출액과 비용, 그리고 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스타트업들에 게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I. 이익배수법

이 외에도 PER(Price-Earnings Ratios)를 이용하여 창출한 이익 대비 몇 배의 주가가 적정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스타트업과 유사한 상태의 기업이 벤치마크로써 존재해야 하고, 당해 스타트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 역시 적용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III. 매출액배수법

매출은 창출하고 있지만 아직 이익을 실현하기 전일 때에는 매출액의 몇 배수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 역시 당해 스타트업과 유사한 상태의 기업이 벤치마크로써 존재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CLV(Customer Lifetime Value) 법이 이 방법에 속합니다. CLV법은 고객 1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과 고객의 예상 잔류기간, 그리고 고객 수를 곱하여 고객이 창출하는 총 가치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예상 잔류기간과 고객 수가 증가할 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이 방법만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방법과 결합하여 사용되거나,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되기도 합니다.

IV. 장부가치배수법

이 방법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기업가치의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벤치마킹 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에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임대료와 같은 운영자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이 지출되고 별도의 유·무형 자산을 구입 혹은 창출해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위 방법들 모두 스타트업에게는 적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여러 VC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장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VC들은 자신들의 수십 년간의 투자 경험에 따라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견한 VC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당해 스타트업의 지분을 선점하려 할 것이고 이는 최저가격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스타트업이 미래에 달성 가능한 최대가치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목표 수익률을 감안하여 현재의 최고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10배의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VC라면 미래 달성 가능한 최대 기업가치를 10으로 나누어 현재 기업가치의 최대값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VC들마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이 정해지고, 스타트업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자신의 기업가치에 대한 감을 익히게 됩니다.

100억원의 기업가치를 여러 VC들에게 제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만나는 VC마다 1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일거에 거절한다면 이는 모든 VC의 최고가격을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모든 VC가 100억원의 가치에 투자를 할 의사를 내비쳤다면 이는 기업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0억원에 대해 거절하기도, 수락하기도 하는 VC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조건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불리한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5) 투자계약의 종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제1장 제2조 2항에 따르면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주식회사 형태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계약으로 주식(Stock),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발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서는 벤처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 선진화된 벤처투자 방식을 2016년 4분기 중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와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등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의 종류로써 주식(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컨버터블 노트의 다섯 가지가 인정되고 있거나 될 예정입니다. 이들 다섯 가지를 보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채(社債, Corporate Bond)에 해당하며 메자닌 방식의 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분	사채	주식
발행 가능 회사	주식회사만 발행 가능	주식회사만 발행 가능
투자자의 경영 참여	(채권자로서) 참여 X	(주주로서) 참여 O
투자에 대한 대가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이자 지급, 이자는 비용처리 O	(이익 한도 내에서) 배당 지급, 배당금은 비용처리 X
원금 상환 여부	(약정된 만기가 되면) 원금 상환 O	(해산 시 or 유상감자 등 제외하고) 원금 상환 X
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	주주보다 우선권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

I. 우선주(Preferred Stock)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 혹은 지분을 ‘보통주’라고 하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식의 소유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에 해당합니다. 보통주에 대응하여, 사업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신주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설립 시의 발기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우선주라고 하며, 보통주에 우선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배당우선주, 상환우선주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통상 우선주라고 하면 배당우선주를 의미하는데, 소정 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비참가적 우선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수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는 누적적 우선주,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 연도에 배당 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로 다시 분류됩니다. 그 외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우선주, 일정 기간 후에 상환할 것을 약정한 상환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시 사용되는 방식은 우선주의 전환권과 상환권이 결합된 상환전환우선주가 사용됩니다.

II.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미리 정해 놓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한 사채를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얻을 수 있는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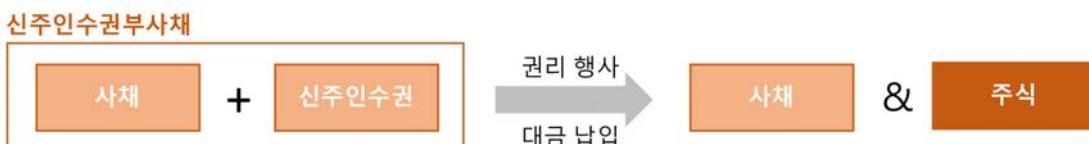
수단으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기업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전환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일반 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주며, 전환권 행사 시에는 사채의 소멸로 인해 부채가 감소하고 신주발행으로 인해 자본이 증가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다만, 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통한 투자유치 시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계약상 조건과 숫자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과연 투자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III.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컨버터블 노트는 만기,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상품이지만 향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권(option)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환사채와 동일합니다. 다만,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전환가격의 결정이 다음 투자라운드로 미뤄진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차이가 있어 ‘오픈형 전환사채’로 불리기도 합니다.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아 그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 입장(스타트업 입장에서도)에서는 사업이 시장에서 검증되어 보다 정당한 평가가 가능한 다음 투자라운드로 밸류에이션을 미루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충족시키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컨버터블노트입니다.

IV.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권리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된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권리 행사 후에도 사채가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환권’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인 반면에 ‘신주인수권’은 사채 원금의 소멸 없이 별도의 대금 납입을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신주발행가액 납입이 원칙이지만, 사채원금으로 납입을 대신하는 ‘대용납입’도 가능한데, 이 경우 그 효과는 전환사채와 동일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얻는 투자수단이며, 발행자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과(권리 행사 및 대금납입으로 인한) 자산 및 자기자본의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 등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사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한 ‘분리형’과 별도로 양도할 수 없도록 한 ‘비분리형’ 두 가지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V.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미리 정해 놓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가 보유한 타회사의 주식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권리행사 시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부여된 권리가 사채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을 통한 ‘전환’권이 아닌 회사가 보유한 타회사 주식 또는 자기주식으로의 ‘교환’권이라는 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환대상주식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인 경우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여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교환대상 주식이 보유하고 있던 타회사 주식인 경우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법상 규정된 사채 세 가지(전환사채: 상법 제513~5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 상법 제516조의2~제516조의11, 교환사채: 상법 제469조2항2호 및 상법시행령 제22조)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부여 권리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권리행사의 대상	발행회사의 신주	발행회사의 신주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 증권(보유 중인 자기주식 포함)
주식 발행(취득)가액	전환가액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교환가액
표면이자율	일반적으로 “일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교환사채”的 순임		
권리행사 시 사채권 존속 여부	사채권 소멸	사채권 존속 (단, 대용납입 시 소멸)	사채권 소멸
권리행사 시 발행회사로 현금 유입 여부	현금 유입 X	현금 유입 O (단, 대용납입 시 현금 유입 X)	현금 유입 X

구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발행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부채↓, 자본↑	자산↑, 자본↓ (단, 대용납입 시 부채↓, 자본↑)	부채↓, 자산↓ (단, 자기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부채↓, 자본↑)
발행회사 입장 장단점	일반사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사채 발행		
	권리행사 시 재무구조 개선		
	신주발행으로 인한 지분희석 효과 O	신주발행으로 인한 지분희석효과 X (단, 자기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실질적 지분율 감소)	
투자자 입장 장점	주식가치가 행사가액보다 높을 경우 권리행사로 인해 자본이득(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주식가치가 행사가액보다 낮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만기에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6) 계약의 주요 용어

I. 동반매수청구권(Tag-along)

VC가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통해 지분을 확보할 때 단서 조항으로 삽입하는 내용 중 하나로, 대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VC의 주식도 매각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소수 주주 입장에서 본인의 지분도 동일 조건으로 매도하도록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II.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스타트업이 VC와 투자계약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때 단서 조항으로 삽입하는 내용 중 하나로, 대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의 주식도 같은 조건으로 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주주의 입장에서 매각 시 소수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일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III. 밸류에이션캡(Valuation CAP)

컨버터블 노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다음 투자라운드에서 밸류에이션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어 초기 불확실성을 감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컨버터블 노트 투자시에 다음 투자 라운드 시점의 밸류에이션(Pre-money Valuation)○] 약정된 밸류에이션캡보다 높은 경우 컨버터블 노트 투자자의 지분을 밸류에이션캡을 한도로 보장해 주겠다는 조건을 넣게 되는데 이 때의 ‘한도’가 밸류에이션캡입니다.

IV. 디스카운트(Discount)

컨버터블 노트 투자 시 다음 투자 라운드에서 산정되는 밸류에이션에 따라 주당 가격이 결정되면, 동 가격에 약정된 할인율을 적용한 후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관계없이 항상 다음 투자 라운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할 수 있으나 밸류에이션캡 개념과는 다르게 일정 투자자가 지분율을 보장 받지는 못합니다.

V. 전환청구기간

전환사채 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의미합니다.

VI. 전환가액

전환사채 투자자가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가액 즉, 전환청구 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말합니다.

VII.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전환사채 발행 후 가치가 하락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총 주식수가 늘어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 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전환사채 발행 시 계약상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VIII. 만기보장수익률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전환청구기간(행사기간) 동안 발행회사 주식의 가치가 전환가액(또는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채권을 소유한 투자자는 전환권(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사채에 투자했을 때 보다 손실을 보게 되므로 발행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만기에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과의 차이를 복리로 계산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IX. 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자금으로 다시 매입한 것으로, 회계상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합니다.

X.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회사의 설립 ·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써, 2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 등 상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합니다.

XI. 선행조건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당해 스타트업 혹은 그 대표가 이행해야 할 조건을 말합니다. 선행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투자를 집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미충족 시 투자자에 대한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XII. 용도제한 및 투자자 동의권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처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사업에 필수적인 지출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당해 합의된 사용처로 투자금의 지출을 제한하는 것을 ‘용도제한’이라고 합니다.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막아 당초 투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당해 자금의 사용 시에 투자자의 승인 혹은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계약 역시 가능합니다.

XIII. 주식처분(또는 지분매각) 제한

회사의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신의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 전 주주의 주식 혹은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계약상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된 제한 규정이 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주식의 발행인 및 그 대주주는 주식 발행 후 1년간 자신의 기존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IPO 이후 일정 기간(코스닥시장은 1년, 유가증권시장은 6개월) 동안 대주주의 주식 매도를 금지한 ‘의무보호예수’제도가 존재합니다.

XIV. 경업금지의무

소규모 조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보유한 기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부분 그 창업자들을 보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을 납입한 후 핵심 인력이 퇴사하여 경쟁사로 옮기거나 새로이 같은 업종의 창업을 하는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마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투자계약에는 핵심 인원들에 대한 의무 근무기간과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XV. 손해배상책임과 그 연대책임

주식회사 제도는 대표자와 법인이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로 존재하며, 투자자들은 그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 혹은 대표자는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악용해 경영자가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표자 혹은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기업을 대신해 경영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손해배상에 대한 연대책임입니다.

XVI. 회수우선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우선권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 때 우선주주의 경우는 의결권을 포기한 대신 잔여재산에 대해서 보통주주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주가 먼저 잔여재산의 일정액을 분배받은 다음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처리 방식이 갈리게 되는데, 우선주주와 보통주주가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는 방식과 보통주주가 2순위로 일정액을 배분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은 비단 청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에 따른 대금을 수령할 경우 우선주주의 투자금액만큼을 먼저 우선주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주주 간 배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XVII. 지분희석 방지

투자자들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 시점의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가치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경우 다음 투자자는 이전 투자자에

비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동일한 투자금액으로 보다 많은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지분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되어, 투자 당시의 기업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가급적 적은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 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되는데, 이 때 도입하는 요건이 지분희석 방지 요건입니다. 당해 투자 시점의 주당 기업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음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경우, 다음 투자유치 시점의 주가와 동일하게 이전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로 지분을 제공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어지므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XVII. 페이투플레이(pay-to-play) 조항

모든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증자 시 기존 주주가 먼저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주주는 필연적으로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한 지분희석방지 조항에 따른 권리행사를 허락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 투자자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분희석에 따른 추가 지분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페이투플레이 조항이라 합니다.

XVIII. 상환권

우선주의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주주가 기업에 대해 투자액과 소정의 이자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를 상환권이라 합니다.

XX. 주식매수청구권

사업양수도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 결정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매수해 줄 것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합니다.

XXI. 강제매각권

경영권이 없는 소수 지분은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강제매각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매각권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들의 지분도 강제로 매각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업 전체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소수 지분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XXII. 신주인수권 또는 선매권

우리나라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존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 주식 수에 따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하여 경영 참여 또는 이익배분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7) 성장단계별 주요 VC 리스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http://diva.kvca.or.kr>)에 2016년 9월 30일 기준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사는 총 119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펀드는 조성된 초기 3~4년 간 투자를 집중하기 때문에 펀드가 결성된 시기(전자공시 상에는 ‘등록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사항에는 투자분야 구분 란이 있어, 당해 펀드의 투자분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이라고만 등록해 놓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VC로 직접 연락하여 투자분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2014년부터 각 VC들이 결성한 펀드 규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위: 억원)

순번	VC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	CKD 창업투자	145	0	100	245
2	KTB네트워크	682	0	760	1,442
3	LB인베스트먼트	1,159	411	815	2,385
4	네오플렉스	720	600	0	1,320
5	대경창업투자	0	50	0	50
6	대교인베스트먼트	330	130	0	460
7	대덕벤처파트너스	0	0	188	188
8	대성창업투자	250	0	150	400
9	데브시스터즈벤처스	0	50	150	200
10	동문파트너즈	253	0	0	253
11	동훈창업투자	0	100	0	100
12	디에스벤처스	0	186	0	186
13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350	800	0	1,150
14	디티앤인베스트먼트	0	228	343	571
15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0	758	0	758
16	마그나인베스트먼트	70	290	0	360
17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187	45	80	312
18	마젤란기술투자	150	0	110	260
19	메디치인베스트먼트	420	113	350	883
20	미래에셋벤처투자	0	750	340	1,090
21	미시간벤처캐피탈	0	280	0	280
22	벤처포럼인베스트	456	0	0	456
23	보광창업투자	253	270	200	723
24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0	305	0	305
25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	214	0	0	214
26	비케이인베스트먼트	0	100	100	200
27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250	0	158	408
28	새한창업투자	0	0	20	20
29	서울기술투자	0	300	0	300
30	서울투자파트너스	100	435	0	535
31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0	0	305	305
32	세종벤처파트너스	100	145	0	245
33	센트럴투자파트너스	0	505	0	505

순번	VC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4	소프트뱅크벤처스	270	1,200	0	1,470
35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0	200	0	200
36	송현인베스트먼트	405	0	47	452
37	수림창업투자	0	175	0	175
38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0	300	0	300
39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600	580	750	1,930
40	스톤브릿지캐피탈	250	310	600	1,160
41	스틱인베스트먼트	800	0	0	800
42	스프링캠프	0	0	100	100
43	아이디벤처스	660	150	150	960
44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0	0	450	450
45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995	269	253	1,517
46	아주아이비투자	300	500	0	800
47	안강벤처투자	140	0	0	140
48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370	33	150	553
49	어니스트벤처스	0	0	180	180
50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0	0	152	152
51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1,149	460	578	2,187
52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2,053	0	1,300	3,353
53	에스엘인베스트먼트	300	0	0	300
54	에스엠콘텐츠인베스트먼트	135	471	0	606
55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0	422	200	622
56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440	1,355	0	1,795
57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0	0	30	30
58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2,030	0	750	2,780
59	엘앤에스벤처캐피탈	400	525	0	925
60	엠벤처투자	600	641	21	1,262
61	엠지인베스트먼트	0	150	0	150
62	오스트인베스트먼트	0	70	281	351
63	원익투자파트너스	0	525	0	525
64	원베스트벤처투자	115	82	0	197
65	유니온투자파트너스	110	440	107	657
66	유안타인베스트먼트	0	300	0	300
67	유큐아이파트너스	0	0	470	470
68	유티씨인베스트먼트	161	235	305	701
69	이노폴리스파트너스	0	311	0	311

순번	VC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0	이상기술투자	40	32	0	72
71	이수창업투자	49	160	100	309
72	이에스인베스터	0	203	0	203
73	이후인베스트먼트	114	112	0	226
74	인터베스트	0	465	370	835
75	제이앤티인베스트먼트	0	0	100	100
76	지비보스톤창업투자	0	303	0	303
77	지앤텍벤처투자	0	310	530	840
78	캐피탈원	0	0	145	145
79	캡스톤파트너스	769	203	489	1,461
80	컴퍼니케이파트너스	770	57	570	1,397
81	케이넷투자파트너스	300	300	0	600
82	케이런벤처스	0	0	170	170
83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0	0	170	170
84	케이비인베스트먼트	0	500	2,000	2,500
85	케이앤투자파트너스	0	0	151	151
86	케이큐브벤처스	0	0	671	671
87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830	0	0	830
88	코오롱인베스트먼트	650	0	510	1,160
89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0	240	223	463
90	큐브벤처파트너스	0	150	0	150
91	키움인베스트먼트	500	410	555	1,465
92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0	145	310	455
93	티에스인베스트먼트	453	1,050	0	1,503
94	티지씨케이파트너스	40	170	500	710
95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540	800	0	1,340
96	포스코기술투자	100	0	0	100
97	프리미어파트너스	0	0	400	400
98	플래티넘기술투자	250	0	111	361
99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0	150	0	150
100	한국벤처투자	100	1,340	737	2,177
101	한국투자파트너스	2,025	1,903	1,450	5,378
102	한화인베스트먼트	0	1,250	0	1,250
103	현대기술투자	0	361	0	361
	총 합계	25,902	27,167	21,304	74,373

(8) 국내 스타트업 투자지원 정책구조 및 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청년위원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아스피린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카이트창업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여성벤처협회,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SK플래닛상생협력센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본투글로벌센터 등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 및 그 산하 기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이들 각각의 홈페이지와 사업공고를 보면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파악할 수 있지만, 사업과 기술에만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란 스타트업들에게는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일의 창구를 개설했는데, 바로 K-STARTUP입니다. K-Startup(www.k-startup.go.kr/)에서 매년 초 발간하는 “20XX년도 창업지원사업”이라는 책자를 참고하거나, 홈페이지 상에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자신에 맞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스타트업지원 정책으로 유명한 것으로 한국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TIPS가 있습니다. 펀드란 개별 투자가 직접 투자할 경우 그 금액이 소액이기도 하거니와 투자에 따른 위험의 헛지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모태펀드(Fund-of-Funds)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내부에 투자를 위한 전문 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주도 하에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한국모태펀드(Korea Fund of Funds)가 2005년 4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2009년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6000억원, 정부재정 4000억원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2035년 까지 30년간 운용됩니다. 2005년 6월 한국모태펀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투자 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주)’가 설립되었고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를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벤처생태계 촉진을 위해 2013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모은 정책자금과 민간 투자자금을 모아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역시 모태펀드의 형태를 가지며 2013년 2조 원을 시작으로 3년간 6조 원 규모로 운용되고, 하위에 창업 단계의 ‘스타트업펀드’, 성장 단계의 ‘지식재산펀드’, 회수 단계의 ‘재기(再起)지원펀드’ 등 성장단계 별로 다양한 자(子)펀드가 운용됩니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는 엔젤투자, 정부보조금, 그리고 대출의 형태가 혼합된 것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까지 연계시킴으로써 스타트업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TIPS프로그램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창업팀당 최대 10억원까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며, 각종 멘토링과 업무공간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관리기관이란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창업진흥원을 의미하고, 운영사는 여러 재단과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로써 2016년 9월 30일 기준 아래 21개사가 선정되어 있으며 현재 9개사 정도를 추가로 모집 중에 있어 전체 30개 가량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분	NO	운영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참여기관	보육공간
1차 (‘13년 6월)	1	카이트창업재단	김철환	김철환(이미지앤머티리얼스) + KAIST	KAIST BI
	2	캡스톤파트너스	최화진	스파크랩(Bernard Moon, 김호민, 이한주) + 아산나눔재단(마루180)	마루180 BI
	3	케이큐브벤처스	유승운	김범수(다음카카오) + 서울대기술지주사BI	서울대기술지주사BI
	4	프라이머	권도균	이택경(다음), 권도균(이니시스), 송영길(앤클럽) + 빅베이슨 + 한양대	한양대 BI
	5	패스트트랙아시아	박지웅	신현성(티켓몬스터) + 노정석(파이브락스) + 포항공대	포항공대 BI
2차 (‘14년 2월)	6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강석흔	장병규(네오위즈)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BI
	7	더벤처스	호창성	호창성, 문지원(Viki) + 더벤처스 스타트업센터	자체 BI
	8	퓨처플레이	류중희	류중희(올라웍스) + KETI(전자부품연구원)	TIPS 타운
	9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태	BootstrapLabs(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자체 BI
	10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이상진	한국과학기술지주사(KST, 17개 출연연 지주사) + 벤처스퀘어	기계연구원BI
3차 (‘14년 7월)	11	엔텔스	심재희	심재희(엔텔스), 네이블 커뮤니케이션	TIPS 타운
	12	액트너랩	조인제	Lab IX(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 인텔 + SK텔레콤	TIPS 타운
	13	포스코	신건철	포스코 계열사 +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4차 (‘15년 3월)	14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이용관(플라즈마트) + 미래과학기술지주(주) + 네오팜 + 생명공학연구원	생명연 BI
	15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백승권	차기철(인바디) + 이민화(메디슨) +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벤처협회SVI

구분	NO	운영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참여기관	보육공간
5차 (‘15년 11월)	16	현대자동차벤처플라자	이원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 혁신센터
	17	ETRI 툴딩스	조병식	DSC인베스트먼트, 디이브이코리아, ETRI	ETRI BI
5차 (‘15년 11월)	18	메가인베스트먼트	김정민	손주은(메가스터디) + 텐케이아시아 + 유니타스클래스	텐케이 BI
	19	웹스	이재춘	이재준(웹스) + 박종환(록앤올) + 부산연합기술지주 + 비스퀘어	부산시 BI
	20	인포뱅크	박태형	박태형(인포뱅크) + 인텔렉추얼스톤 + 텀블러	자체 BI
	21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자지주	이병태	행복나눔재단(SK) + 씨엔티테크 + 코이스라파트너스 + 판도라TV	카이스트 BI (서울)

*주: BI = Business Incubator 창업보육센터를 의미함.

TIPS 프로그램은 상기 운영사로부터 엔젤투자 약 1억원, 정부에서 제공하는 R&D 매칭투자 최대 5억원, 창업자금 최대 1억원, 엔젤행업펀드 최대 2억원, 해외마케팅비 지원 최대 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의 대가로 지분(주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엔젤투자 약 1억원에 대한 것인데, 법적으로 창업팀의 지분율을 60%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운영사는 지분을 최대 30%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엔젤행업펀드의 경우에도 지분을 제공해야 하는데, 통상 최초의 엔젤투자시에 평가된 기업가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R&D 매칭투자의 경우 창업 팀이 소정의 양식에 R&D 계획과 필요한 자금, 그리고 지출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면, 당해 창업팀이 20%를 자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는 아래 산식에 따라 4.8억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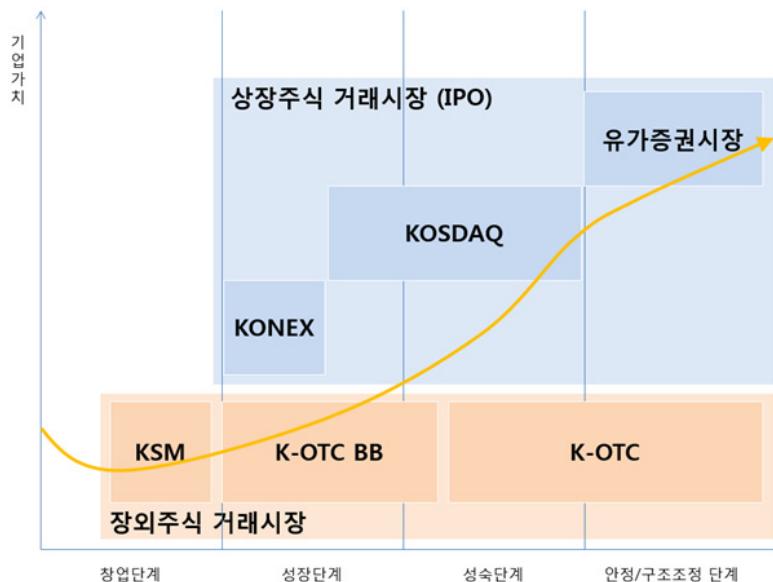
$$\text{Min}(\text{한도}=5\text{억원}, 6\text{억원} \times 80\%)=4.8\text{억원}$$

이 R&D 지원금은 앞서 언급한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해 TIPS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했다고 판단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R&D금액의 10%만을 상환하면 됩니다.

R&D지원금 상환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

- 1) 후속 투자 20억원 이상 유치
- 2) M&A
- 3) IPO(KONEX 공개 포함)
- 4) 연매출 6억원 초과 달성

(9) 주식의 거래시장: 프라이빗 마켓, 코넥스, 프리보드, 코스닥, 유가증권시장



I. 프리보드, K-OTC, K-OTC BB

프리보드는 유가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폐지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던 장외 거래시장입니다. 2014년 8월 25일 이 프리보드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중소기업부터 유명 대기업 및 중견기업까지 거래할 수 있는 K-OTC 시장을 출범시켰고, 삼성SDS · 미래에셋생명 등 굵직한 대형사들이 K-OTC 시장을 거쳐 거래소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모험자본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K-OTC 산하에 K-OTC BB(Bulletin Board) 시장이 추가로 개설되었습니다. K-OTC 시장은 상장시장과 동일하게 HTS 등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인 반면, K-OTC BB 시장은 호가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 의사에 따라 증권사간 협의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II. 프라이빗 마켓 또는 KSM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시장으로 정식 명칭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이며 2016년 10월 경 개설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혁신센터와 IBK기업은행 ·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등 거래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한 스타트업들을 등록하여 거래가 진행됩니다. KSM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 특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III. 코넥스 (KONEX)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경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자본시장입니다.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중 하나만 충족하면 코넥스 상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모든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연기금이나 금융회사, VC, 예탁금 1억원 이상의 개인 등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IV. 코스닥(KOSDAQ)

당초 개설 취지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조건을 완화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자본 30억원(벤처기업은 15억) 이상이면서 당기순이익 20억원, 매출액 100억원(시가총액 300억원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자기자본이익률 10%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V.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피(KOSPI)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700억원 이상이어야만 진입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다른 모든 거래시장은 이 거래시장에 대한 접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5)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란 성공한 벤처사업가가 자신의 성공 노하우와 투자재원을 활용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단기간(통상 3개월 혹은 6개월)에 실전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곳으로, 아이디어 단계의 창업팀을 육성하여 사업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사무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활용해 해외 투자자나 협업 가능한 기업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액셀러레이터 역시 투자와 엑싯을 통해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엔젤투자자나 VC와 동일하지만 기업의 성장단계에 있어 이들 둘의 사이에 위치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 기여한 바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스타트업들이 꼭 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그 참여가 성공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투글로벌센터가 발간한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2015년 기준 30여 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SBA)은 매월 10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발해 보육하고 있고 스파크랩의 경우는 1년에 두 번에 걸쳐 각 기수 별로 5~10개 가량의 기업을 선발해 보육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월평균 9만 개 가량의 신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법인사업자 비중이 약 17%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액셀러레이터들이 보육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전체의 2%도 채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업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역량과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비즈니스 자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모집 공고를 낸 후, 지원을 접수 받아 그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 그리고 사무환경을 제공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은 당해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인지를 검토하게 되며, 심사 담당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고 보다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단계에서는 멘토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는데, 액셀러레이터 별로 투자금액은 천차만별이기는 하나, 통상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합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데모데이라 불리는 행사로 마무리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데모데이는 액셀러레이팅을 받은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잠재 고객들 앞에서 자신의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 각종 전문가들과 협업이 가능한 다른 스타트업들을 만나게 됩니다. 액셀러레이터 입장에서는 본 데모데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후속투자를 유치받도록 하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설립 주체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민간 액셀러레이터, 기업액셀러레이터로 구분되며, 각 액셀러레이터별로 투자분야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기존 사업과 연관된 기술이나 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들에 관심이 있으므로 스타트업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내 액셀러레이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No.	유형	액셀러레이터	투자분야	특징
1	정부 산하 기관	서울산업 진흥원	VR/AR, IoT 등 기술 기반 전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기관 - BM모델진단 및 회계, 세무 등의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 - 창업공간 제공 - 2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창업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 진행
2	정부 산하 기관	창조경제혁신 센터	강원: 빅데이터(네이버) 경북: IT, 스마트팩토리(삼성) 대구: IT, 전자, 섬유(삼성) 포항: 에너지, 소재(포스코) 울산: 조선, 의료기기(현대중공업) 부산: 유통, IoT, 영화(롯데) 경남: 기계장비(두산) 전남: 농수산식품(GS) 광주: 자동차, 수소연료전지(현대자동차) 제주: 문화, 소프트웨어, IT, 관광(카카오) 전북: 탄소섬유(효성) 대전: 기술사업화(SK) 세종: ICT, 스마트농업(SK) 충남: 태양광에너지(한화) 충북: 바이오, 뷰티(LG) 경기: IoT, 게임, 핀테크(KT) 인천: 스마트 물류(한진) 서울: 문화, 도시라이프(C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지역의 18개 혁신센터 운영 - 센터별로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대기업 선정 - 멘토링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대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3	정부 산하 기관	경기콘텐츠 진흥원	콘텐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콘텐츠/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 1:1 사업개발 컨설팅 제공 - 네트워킹, 초기 엔젤투자 연계 지원
4	민간	D.CAMP	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전국은행연합회 회원 금융기관이 출범 - 사무공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 '디엔젤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투자 - 'K스타트업'을 통한 간접투자
5	민간	프라이머	모바일, ICT, 헬스케어 분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 사업 전략, 제품/서비스, 마케팅 등의 멘토링 제공 - 다양한 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초기창업자금 직접투자
6	민간	스파크랩스	인터넷, 모바일, 온라인 게임, 이커머스, 디지털 미디어, 헬스 케어, 핀테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대상 액셀러레이터 - 모바일, 커머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멘토들의 멘토링 - 최대 6% 지분의 대가로 \$25,000를 직접투자

No.	유형	액셀러레이터	투자분야	특징
7	민간	퓨처플레이	기술 기반 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단계의 첨단 기술 기반 스타트업 대상 액셀러레이터 - 특허/법률 상담 지원 -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씨드머니 직접투자
8	민간	매쉬업엔젤스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바일, 커머스 등 ICT, IoT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전략, 서비스, 마케팅 PR, 법률 등 멘토링 제공 - 네트워킹, 성과발표회, 세미나 제공 -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 사이의 직접투자
9	기업	롯데 액셀러레이터	유통, 식품, O2O, 패션, AI, VR, IoT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그룹 산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기관 -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 사무공간 제공 - 홍보/마케팅 지원 - 2~5천만원의 직접투자
10	기업	원큐랩	핀테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은행 산하 핀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기관 - 사무공간 제공 - 경영컨설팅, 법률 · 특허 멘토링 및 그룹 계열사와의 사업 연계 - 직 · 간접투자
11	기업	KB 스타터스밸리	핀테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금융 산하 핀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기관 - 멘토링, 제휴 사업 추진 - 사무공간 제공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픈트레이드'를 통한 펀딩 지원 - KB투자증권과의 매칭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의 투자금 제공
12	기업	신한퓨처스랩	핀테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금융그룹 산하 핀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기관 - 금융 및 기술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멘토링 제공 - 사무공간 지원 - 제휴사업 추진 - 직접투자 및 외부 VC와의 투자연계
13	기업	한화 드림플러스63	핀테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생명 산하 핀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기관 - 사무공간 무상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 법률/회계/세무/홍보/마케팅 및 기타 분야 컨설팅 제공 - 직접 투자 및 국내외 유명 투자자들과의 투자 연계 지원
14	기업	위비핀테크랩	핀테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은행 산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기관 - 계열사 내 금융전문가 집단 멘토링 및 제휴 사업 추진 - 사무공간 제공 - 직접 투자

6) 크라우드펀딩

(1)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특징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Crowd)으로부터 온라인상으로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것으로, P2P(peer to peer) 금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자금조달 방법과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가 펀딩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엔젤투자자나 VC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당해 투자자·심사역의 투자성향이나 경험, 미래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각자 자신의 경험 등에 비추어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목표 조달액의 달성을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소수의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모이게 되므로, 편견(bias)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객관적으로 제품이나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시장조사와 마케팅 수단으로써도 훌륭한 방법으로 초기 스타트업들이 한 번쯤 고려해 봐야 할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2) 크라우드펀딩의 형태

크라우드펀딩의 형태는 후원형, 대출형, 그리고 증권투자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후원형은 아무런 대가성 없이 당해 스타트업의 비전과 가치, 열정을 보고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유치한 자금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 출시 전에 후원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사은품 개념으로써 티셔츠, 에코백, 연필 등 소소한 상품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형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후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약속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매출 창출 직전 단계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민간은행으로부터 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투자형은 투자의 대가로 주식이나 회사채 등 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주식공개모집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띕니다. 국내 및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현황은 다음 (6) 및 (7)과 같습니다. 증권투자형의 경우, 2015년 7월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되어 아직 활성화가 진행 중이지만, 세계적으로는 가장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3)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플랫폼 제공의 대가로 유치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징수합니다. 회사마다 수수료 책정 방식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각 사별로 확인해야 하나, 5~15% 가량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3% 가량의 카드사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데, 투자금을 예치 받기 위한 방식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유치하게 되면 실제로 스타트업이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약 890만원이 되므로, 목표금액 설정시 이들 수수료까지 감안하여 필요한 자금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식
후원금 총액 (A)	10,000,000	
플랫폼 수수료 (B)	700,000	10,000,000*7%(가정)
카드사 PG수수료 (C)	300,000	10,000,000*3%(가정)
부가가치세 (D)	100,000	(700,000+300,000)*10%
실수령액 (E)=(A)-(B)-(C)-(D)	8,900,000	

(4) 증권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업 생태계의 성숙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은 매년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이에 대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들 안전장치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와 방법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I. 자격

금융보험업(핀테크는 가능),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캠블링업 등을 제외한 비상장기업으로써 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성 사업수행자

II. 조건성취형

자금모집액이 목표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크라우드펀딩은 취소되고 납입한 금액은 모두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자금조달액이 목표금액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를 대비하여,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III. 발행 가능 증권

지분증권(보통주, 우선주, 신주인수권 등), 채무증권(회사채, 기업어음 등), 투자계약증권(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기로 하는 계약상의 권리)만이 가능하며, 수익증권과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증권예탁증권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IV. 조달금액 제한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모집한 금액, 소액공모금액, 크라우드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7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전문 투자자 등이 1년간 매도할 수 없도록 제한한 금액은 7억원의 발행 제한금액 계산 시 제외 합니다.

V. 투자금액 제한

스타트업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원금손실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분석 능력과 손실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투자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경우 동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연간 200만 원으로 제한한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투자한도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각각 연간 5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고수익·고위험 증권에 대한 투자과열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VC나 은행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자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당해 스타트업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나 최대주주의 연고자 등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동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 제한	연간 총 투자금액 제한	비고
일반투자자	2백만원	5백만원	
위험감수능력높은 투자자	1천만원	2천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자 등
전문투자자	무제한	무제한	창투조합, 은행, 전문엔젤 등

VII. 회사 및 사업정보 제공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려는 스타트업은 증권발행에 대한 상세 조건, 회사의 개요와 사업계획서, 자금의 사용계획 등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당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영업양수도, M&A 등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된 경우에는 이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동 정보에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 발행인 및 그 대표자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자는 게재된 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 정보가 사실이라는 점을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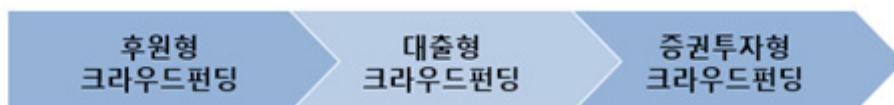
VIII. 대주주 보유 지분 매각 제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발행인 및 그 대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기존의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VIII. 투자광고 제한

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이외에서의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털사이트나 SNS에 직접 광고를 하는 대신,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5)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별 활용 예



사업초기, 기업의 비전과 사명(Mission)을 소개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잠재적인 소비자로써 스타트업의 방향에 진심어린 조언을 제공해 줄 멘토로써 기능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단순 기부 방식의 후원이 아니라,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의 후원형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시제품의 컨셉을 소개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거나 신제품 컨셉의 시장성을 평가하는 용도로도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딩 종료 후 약 2주 후에 자금이 정산되고, 그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최소 1개월 이상의 개발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개발이나

제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발완료 후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교환권을 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원자들로부터 시제품에 대한 반응을 수렴하여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고 제품의 시장성도 확인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양산하여 정식으로 출시할 단계입니다. 양산을 위해서는 제조 협력사와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시장에 출시할 초기 물량을 위해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는 바, 초기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전자본은 재고자산과 같이 단기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장기적인 자금조달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폭발적인 매출액 증가로 인해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 혹은 초기 양산 물량을 외주 제작하지 않고 자체 설비를 도입하여 제작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대로 장기적인 자금조달 방법이 적절합니다. 운전자본과 달리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사용할 목적이므로 투자로 인한 효익이 사용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증권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현황

순번	플랫폼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	주소
1	8퍼센트	O			https://8percent.kr/
2	굿펀딩	O			http://www.goodfunding.net/
3	노킹온	O			http://www.knockingon.me/
4	농사펀드	O			https://farmingfund.co.kr/
5	렌딧	O			https://www.lendit.co.kr/
6	머니옥션	O			http://www.moneyauction.co.kr/
7	메이크스타	O			http://www.makestar
8	씨펀	O			http://www.cfun.co.kr/
9	아이디어오디션	O			http://www.ideaaudition.com/
10	아이시드	O			http://www.i-seed.co.kr/index
11	어니스트펀드	O			https://www.honest-fund.com/
12	오마이컴퍼니			O	http://www.ohmycompany.com/
13	오지랖	O			https://www.oizr.kr/
14	오퍼튠	O			http://www.opportune.co.kr
15	오플트레이드			O	http://otrade.co
16	와디즈	O		O	http://www.wadiz.kr/
17	유니어스		O		http://www.uni-us.co.kr/
18	유캔스타트	O		O	http://ucanstart.com/
19	인크			O	http://www.yinc.kr
20	케이펀딩	O			http://www.kfunding.kr/
21	키다리펀딩	O			http://www.keedari.com/
22	키핑펀딩		O		http://keefun.kr/index.php
23	텀블벅	O			http://www.tumblbug.com
24	텐스푼	O			http://www.tenspoon.co.kr/
25	팝펀딩		O		http://www.popfunding.com
26	펀다		O		https://www.funda.kr/
27	펀더스		O		http://www.fundus.co.kr/
28	펀딩21	O			http://www.funding21.com/
29	펀딩트리		O		http://fundingtree.co.kr/
30	펀루	O			http://funroo.net/
		16개사	11개사	5개사	

(7) 대표적인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현황

순번	플랫폼	특징	주소
1	Experiment	과학계·과학자들에 초점을 맞춘 개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https://experiment.com/
2	FundAnything	캠페인에 대한 이유나 제한이 없어 휴가비 조달이나 병원비 모금과 같은 것도 가능	https://fundanything.com/en
3	FunderHut	개인,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및 지역사회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로 펀딩에 대한 유료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http://www.funderhut.com/
4	IndieGoGo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 하는 것을 돋기 위한 개인 크라우드 펀딩, 미디어아트, 기술, 건강, 환경,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http://www.indiegogo.com
5	KickStarter	예술, 음식, 연극, 첨단기기 등 다양한 주제 가능. 실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http://www.kickstarter.com
6	Patreon	컨텐츠 창작자들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	http://patreon.com
7	PledgeMusic	소비자의 펀딩과 선주문으로 음반을 제작하기 위한 개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http://www.pledgemusic.com/
8	Pozible	비트 코인 등 다양한 통화 및 형식 허용	http://pozible.com
9	RockHub	미국의 코미디, 드라마, 다큐멘터리, 라이브 전문 채널인 A&E 네트워크와 제휴되어 있어, 투자자나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함	http://rockethub.com/
10	Tilt	펀딩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 몇 안되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신용카드 수수료는 발생함)	http://www.tilt.com/en

2

펀딩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벤처캐피탈, 사업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은 스타트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캠퍼스, 신흥합밸리, 상암, 용산, 판교, 팀스타운, 테헤란로 등 거대한 혁신의 섹터들은 누가 부르지 않아도 성공과 혁신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모임 혹은 집단거주공간의 개념을 넘어, 상호 도움을 주면서 아이디어와 자원을 공유하고, 이들 아이디어가 반영된 신상품을 가장 먼저 사용하면서 피드백을 상시적이고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생태계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 스토리들이 수년간 축적되어 유무형의 형태로 전수되고 있으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시장에 선보이는 데에 어디보다 호의적인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조달이라는 수혈을 받을 때, ‘자금’이라는 피 자체가 아니라 수혈받기 위해 옆에 누워있는 다른 스타트업과의 의견 교환, 자금조달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튼튼해지는 기업의 역량,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다른 설립자들의 역경의 스토리들로부터 얻는 분위기와 환경의 가치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을 위한 고단한 과정을 함께하는 지원군과 파트너가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용함에 있어, 자금조달과 생태계 활용을 별개로 놓고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의 활동은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따로, 멘토링 따로, 해외진출 따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기업의 자원을 중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접하는 생태계 내의 상대방이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네트워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상시적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1) 크라우드펀딩의 후원자(혹은 투자자)와 플랫폼 제공사

혁신적인 제품(혹은 서비스)의 정식 출시 이전, 신제품(혹은 신서비스)의 최초 이용자로써 크라우드펀딩의 후원자 혹은 투자자들은 린(Lean)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들로부터 제품의 장단점을 여과없이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제공사들은 법에 의해 강제되었건 아니건 투자자들과 스타트업 간 정보 교환을 위한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제품을 개선하는데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제공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창업가들과의 미팅을 주선해 주기도 하고, 제품을 돋보이게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제품 뿐 아니라, 스타트업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도 훌륭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으로 제품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들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특히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기본적인 검토를 수행해주므로, 이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이들 플랫폼 제공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한 데 모여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사무공간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들지 않더라도, 다른 스타트업들과 스스럼 없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창업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액셀러레이터의 보육기업으로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 액셀러레이터들은 보육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을 일반 스타트업들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무료 세미나와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는 사무공간 혹은 체험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육기업들이 사용하는 3D프린터와 같은 장비들에 대해서도 신청만 하면 역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간혹 맥주파티 등을 개최하는데 자유롭게 참석해서 그들의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3) 창조경제혁신센터, 본투글로벌센터 등 각종 정부기관

이들은 스타트업들에게 연구비, 컨설팅비용, 해외진출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해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가이드북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들이 보유한 기술·특허·데이터베이스를 스타트업에 공개하거나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인증해 주기도 합니다. 창조경제타운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박사급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BOSS>라고 불리는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지원시스템(<http://boss.kisti.re.kr/>)”입니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가 중소기업의 신사업 발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추진해 온 ‘신규 유망 아이템 발굴 사업’의 결과, 유망 아이템으로 선정된 것들을 현 시점에서 재조명하여 시장성과 기술성에 대한 분석과 판단기준을 공개한 것으로, KISTI 내 공학박사·경영학박사들이 유망아이템 선정에 사용한 분석기법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품이나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되는지, 다른 사례들은 어떤 결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 <K-MAPS>라고 불리는 “산업시장 인텔리전스 시스템(<http://kmaps.kisti.re.kr/>)”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업계획서에서 다루는 여러 항목 중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사의 매출액 정보를 추가하여 시장점유율을 표시해주는 등 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스타트업의 사업보고서에는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근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가 약한 시장규모와 점유율에 기초한 미래 수익성에 대한 정보는 비단 투자유치 목적으로써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HS 코드별로 수출입 물량 정보도 조회가 가능하고 기업의 역량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SWOT분석(S 강점, W 약점, O 기회, T 위협)의 경우 각 영역별로 범주화된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어 스타트업들의 정보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회계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 컨설팅사

일반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KPMG삼정회계법인과 같이 스타트업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다수의 컨설팅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컨설팅사들은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PMG는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자가진단툴인 GRIs(Growth Readiness Index for Startups)를 공개하고 웹페이지(<https://seed2speedgri.kpmg.com/>)를 개설하였습니다. GRIs는 KPMG Global Member Firm들이 스타트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6가지 핵심 분야(재무, 고객, 인재, 정보통신기술, 기업지배구조, 해외진출)를 정의하고, 각 분야별로 기업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총 52가지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스타트업 스스로 자신의 비즈니스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3가지 관점(절대평가, 본인이 설정한 중요성과의 비교, 유사 단계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과의 비교평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5) CVC(Corporate VC) 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대기업이 투자 혹은 보유하는 기업들은 당해 대기업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은 아래 그림에 나타난 가치사슬(Value Chain) 내 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협력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구 혹은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대부분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들 가치사슬의 기능들을 대기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4



Government Policy and Tax

정부정책과 세금

Government Policy and Tax

- 01 법인세에 대한 이해
- 02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
- 03 기타의 세금의무
- 04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 05 감사(Audit)에 대한 이해



세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는데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세무 규정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법인세에 대한 이해****1) 법인세 업무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Section 1 법인설립과 재무운영 부분에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사업자등록’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인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합니다. 신고서를 부속서류들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가져가 직접 서면신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신고서류의 오류를 검증하기 힘들고 세액공제의 혜택(부가세 확정신고 1만원, 법인세 신고 2만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3) 언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증인 경우
-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함)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함)
- ⑧ 위 ①, 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법인세 신고가 잘 마무리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법인세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잘 신고 하였다면 해당 접수증에 접수결과가 ‘정상’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50%,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20%, 1년초과 2년 이내에 10% 경감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금 납부 기한은 언제이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기한 내(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및 ARS · ATM에 의한 납부,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를 선택하여 전자납부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세액의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법인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현행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8)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법인세 처리가 있나요?

(1) 개인적 경비

법인의 사업을 위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 국제거래 6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상여처분, 배당처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정규증빙 미수취 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대료, 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때 관련 비용을 가공원가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경비가 불인정 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상여처분 등을 통해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인건비를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회계적 이익과 세무적 이익은 다른 건가요?

회계적 이익에서 가산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차감조정(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통하여 세무적 이익을 산출하는데 이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상의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법에서 인정한다고 열거해 놓은 수익과 비용으로 ‘수익-비용 = 회계적 이익’ 이라면 ‘익금-손금 = 세무적 이익(과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만약 세무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세무조정을 통해 계산된 세무적 이익이 결손(적자)이라면 물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 의무는 변함없습니다. 또한 해당 결손금액은 10년간 이월 됩니다. 즉 향후 10년간 회사에 이익이 생길 때 그 이익의 80%까지(중소기업은 100%) 결손금만큼 제외되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인 법인세 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 참고기사:

-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4] 적자인데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1) (<http://platum.kr/archives/65377>)
-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9] 적자인데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2) (<http://platum.kr/archives/67436>)

11) 어떤 증빙을 구비해야 하나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 분일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적격증빙은 필수적으로 구비해야하며, 이 외의 각종 계약서, 내부결제, 거래처와 e-mail내역 등 법인의 활동에 관련된 모든 증빙들을 구비하여 놓는다면, 향후 세무조사 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2) 불성실 세금 신고 시 불이익

법인세는 법인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 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거래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각종 원재료나 상품 등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금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1년에 4번 신고·납부 합니다.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제2기	예정신고	7.1~9.30.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4)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수취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아예 해당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2%의 가산세를 내고 매입자는 공급가액에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합니다.

5)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제품/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사실로 보아 착오 등으로 잘못된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 작성 연월일

위의 내용을 잘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여도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록 전 20일까지는 가능)

6) 세금계산서 없이 저렴하게 현금거래를 한다면 어떤가요?

도매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무턱대고 구입하면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입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빙이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자료상’(지출증빙 혹은 매입세액공제 용도로 불법으로 세금계산서 자체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조사국에 통보되어 거짓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7)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거래로 영세율과 면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기 쉬운데 영세율은 주로 ‘수출’거래에 있어서 이중과세 제거가 목적으로, 면세는 생필품이나 문화사업 등에 대해 정책적인 조세부담경감이라는 취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따로 있지만 일반 기업을 경영할 때에도 해외와의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와의 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거래 시 영세율 적용여부를 항상 검토해야 합니다.

	영세율	면세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국 과세원칙 (이중과세 제거 목적으로, 생산만 하는 국가의 과세 제거,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부가세 징수) - 수출 등 외화 획득 목적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생활안정을 제고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하는 재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공급하더라도 내국신용장(LC) · 구매승인서에 의한 국내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국내에서의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필수품 (미기공 농·축·수·임산물, 수돗물등) - 국민후생용역(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여객운송용역, 교육용역등) - 문화관련 재화·용역 - 금융보험용역 - 인적용역, 공익관련재화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
세금계산서교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공제	공제 가능	공제 불가



3 기타의 세금의무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받는 소득자(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근로소득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차후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2)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2) 주식 양도 시의 세금

스타트업의 주주가 구주양도 방식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출자가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분실 등 여타의 사유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으로 순차적 적용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

구분		세율
중소기업	일반	10%
	대주주*	20%
중소기업 외 법인	일반	20%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에게 출자해서 취득하게 된 주식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 등		비과세

*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2017년부터는 1%이상 또는 25억원 이상으로 개정 예정)

4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현재 세법상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정의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중 결손금 발생 또는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5년간(설립 후 5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는 설립 후 10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향후 5년 내에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경우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이월세액공제액은 합병 시에 합병법인에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엑싯시점에 가산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 (업종별로 400억~1,500억 이하)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경우(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 : 다음 3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법인

- ①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투자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보증·무담보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보증·무담보대출 금액이 총 자산의 5%이상일 것
- ③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1) 중소기업의 세금혜택

구분	내용
세액감면 및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지원 설비 수증이익 손금산입 등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타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 접대비 한도액 우대(중소기업 1,800만원 단, 2016년 2,4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2) 벤처기업의 세금혜택

구분	내용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액 감면
취득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기타	코스닥 상장 심사우대, 신용보증 심사 우대,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병역특례업체 선정 우대, TV·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70%감면) 등

3) R&D 비용의 세금혜택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30% -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3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해연도지출액 × 25% or [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 × 50% - 연구시험용 자산 등 연구개발 설비 투자금액의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

4) M&A 시의 세금혜택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2.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면 가능* -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p>*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p>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3.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5. 합병에 따른 중복재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등

5 감사(Audit)에 대한 이해

1) 감사(Audit)란 무엇인가요?

외부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고 감사의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감사기준서에 명시된 재무제표감사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Audit)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에 관해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대부분의 일반목적체계에서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해당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즉, 기업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무현황을 제3자(감사인)가 검증을 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에 감사활동의 의의가 있습니다.

회계감사기준서에 명시된 감사의견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한정의견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or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부적정의견

: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

의견거절

: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2) 감사(Audit)는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회계감사는 임의감사와 법정감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사의 경우 주식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어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법정의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외의 법정감사 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임의적으로 외부의 감사를 받는 경우를 임의감사라고 하는데 보통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제출용, 혹은 주주의 요구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감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법정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사이트에 공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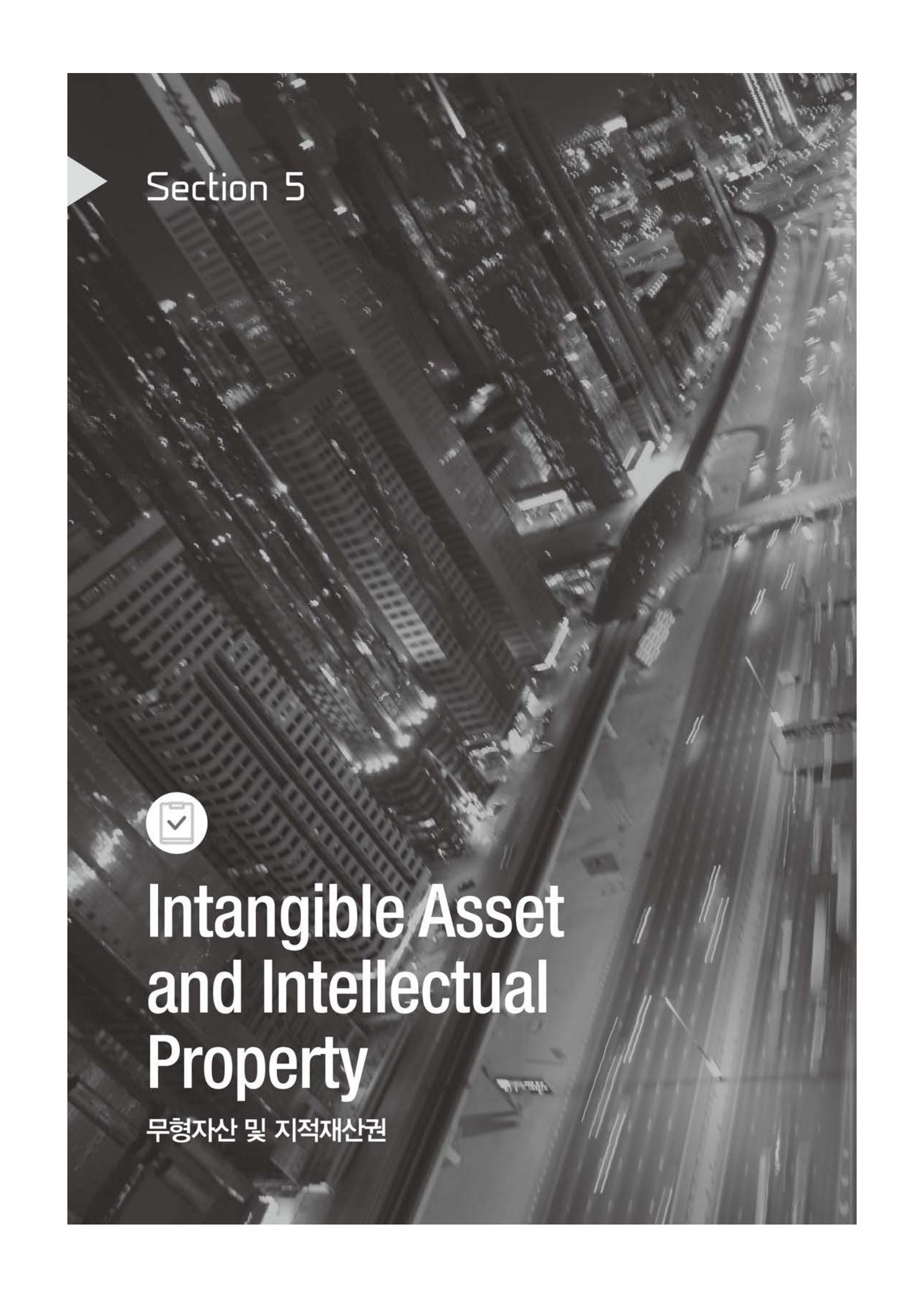
(*)법정감사 대상 기준

외감법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 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 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 한다

3) 감사(Audit)를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benefit은 무엇이 있나요?

감사를 통해 신뢰성이 부여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은행, 공급사, 고객과 거래 시 더 나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를 통해 내부통제 및 절차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 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Section 5



Intangible Asset and Intellectual Property

무형자산 및 지적재산권



Intangible Asset and Intellectual Property

- 
- 01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필요성
 - 02 지식재산권의 유형
 - 03 스타트업에 유용한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제도



스타트업은 성장하면서 독창적으로 보유한 신기술, 브랜드명, 제품 디자인, 및 제품 판매 프로세스와 같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게 되는데, Section 5에서는 이와 같은 무형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스타트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필요성

1)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이란 기준에 사용해 온 ‘지적재산’과는 의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신규 제정되면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 제3조제3호)

2)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기업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갖는 의미는, 첫째, 권리자의 혀락 없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타인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견제할 수 있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쟁 가능성이 있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는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의 침해 모방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보호할 수 있고 유사 제품 생산을 견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독점하여 소비자나 비즈니스 파트너로 하여금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고, 라이선스 또는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신뢰 향상과 수익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타트업의 경우에 각종 벤처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술담보사업자금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유형

지식재산				
브랜드관련	고객관련	창작물관련	계약관련	기술관련
1. 상표권 - 업무상 사용하는 표지, 제품명, 서비스 브랜드	1. 정보재산권 - 고객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대외비, 고객서비스방법	1. 디자인권 - 웹사이트 디자인, 제품디자인	1. 고객의구매조건(환불 정책포함)	1. 특허권 - 별명, 알고리즘(고객 DB분석시 사용) BM특허 및 시스템
2. 상호권 -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2.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2. 저작권 - 브로셔, 웹사이트 콘텐츠, 교육 자료, 음악, 광고, 문구, 사진, 동영상 및 시청각 자료	2. 지식재산권 사용 라이선스(앱, 웹디자인) 3. 공급사계약(유통 물류) 4. 기밀, 비밀유지계약서 (NDA)	2. 실용신안권 - 물품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3.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설계, 회로배치, 생명공학기술
3. 신지식재산권 - 프랜차이징, 인터넷도메인네임, 권리적표시, 색채상표, 입체상표, 맛/소리/냄새상표등				

(2)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경우에 직무발명이라 하는데(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등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가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특허권의 확보를 위한 기본 작업을 사용자가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실시권에 의한 계속 실시를 보장하는 것이나 다만, 사용자 등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미리 합리적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또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

한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독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통해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도 저작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 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간판에 사용할 로고를 디자이너에게 구입하는 경우에 저작권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사용권만 구입하고 사용하다가 회사 제품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는 방법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가리키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생하지만(저작권법 제10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원부에 권리가 기재되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켜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상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저작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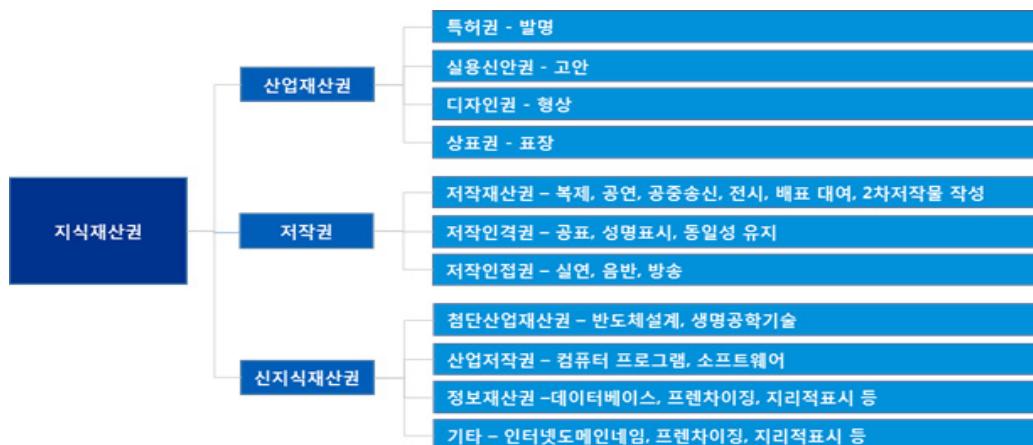


2 지식재산권 유형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활동을 통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부여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예술/문학/학술활동을 통한 문화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물에 부여하는 저작권, 그리고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이 둘의 전통적인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일컫는 신지식재산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 산업재산권은 다시 산업에 이용되는 발명, 고안, 표장, 디자인 등에 부여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으로 나뉘며,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과 그들의 명예와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 및 그 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등으로 나뉘고,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산업저작권,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및 뉴미디어 같은 정보재산권을 비롯해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프렌차이징, 지리적 표시,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네임, 색채/입체/맛/소리/냄새 상표 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유형〉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발명진흥법 제2조), 산업활동에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해 인정되는 독립된 권리입니다.

〈국내 산업재산권의 정의 및 보호기간〉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 발명수준이 고도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써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과 그 외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
예시	전자를 응용해 처음 전화기를 생각한 것	분리된 송수화기를 일체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	전화기의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상호나 마크
보호 기간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씩 연장가능)

(1) 특허(실용신안)권 – 발명(고안)품에 대한 보호

사례) 고경찬 벤텍스 사장, 컬럼비아 기술 무효 입증 [한국경제신문, 2014-08-27]

한국 중소기업 벤텍스는 발열이나 온도를 낮추는 기능성 섬유 원단을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거대 아웃도어 업체 컬럼비아로부터 발열원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특허침해소송을 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아웃도어 업체로 납품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추가 계약이 컬럼비아의 경고장에 의해 무산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벤텍스는 오히려 컬럼비아가 보유한 특허가 영국 특허를 베낀 것으로 주장하며 역공격하는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사건에서 모두 이겼다.

이것은, 벤텍스가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기술개발에 힘쓰며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고사장은 인터뷰에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10만여 건에 달하는 특허를 일일이 분석하였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방어 및 회피를 위한 특허까지 다 출원한 것이 빛을 보았다고 강조하였다. 벤텍스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신기술 제품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에 앞장선 국내 업체와 연구소의 기술개발 담당자에게 수여하는 2016년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기업으로 도약이 기대되는 기능성소재 전문기업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적이 없는 신제품 및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은 반드시 특허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는 물건(물질포함)발명 외에도 방법발명 및 용도발명도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보호하는 알고리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능을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원된 특허가 특허청의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된다면 특허권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등록된 발명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I . 특허(실용신안)권의 요건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정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 주체적 요건 (정당한 발명자이고, 권리능력이 있을 것)

주체적 요건은 발명자가 갖추어야 될 요건으로 특허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됩니다. 특허청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을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33조) 또한,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해 권리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객체적 요건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1〉 발명일 것

특허법 상의 발명(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고안)이 아닌 것은 수학 계산법, 작도법, 암호 작성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소스코드) 자체, 과세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2〉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산업성이 없는 발명은 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고, 미완성 발명 등입니다. 즉,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특허(고안)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3〉 신규성(novelty)이 있을 것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전기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한 발명을 말합니다. 다만, 출원 전 1년 이내에 출원인에 의해 논문이나 간행물 등에 공지된 경우는 공지 예외 주장을 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4〉 진보성이 있을 것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창작 수준의 난이도를 말하는데, 신규성을 갖추었을 때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실용신안은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이때, 공지발명들의 단순 집합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조합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기/E

공익적 측면에서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절차적 요건

상술한 요건 외에 출원 절차에 따른 방식에 적합할 것,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출원 범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 등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II. 주의사항

특허는 특히 새로운 기술로 참신해야 하므로 외부 거래처와 상담 시에 기밀유지협약서 (NDA; 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여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진행하는 신기술인 경우에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대중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출원 시에 기술이 공개되더라도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나을지 특허권을 획득하지 않고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를 하여 보호하는 것이 나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자에 대한 예로써 코카콜라는 제조법을 특허권으로 소유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해 왔습니다. 즉, 영업비밀은 공개되면 사라지는 권리이고 특허는 공개가 됨으로써 일정 기간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상표권 – 업무표장에 대한 보호

사례) 애니팡 상표권 분쟁 2라운드 선데이토즈 ‘승소’ [전자신문, 2013-10-10]

스마트폰 이용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국민 모바일 게임 ‘애니팡’ 제작사 선데이토즈가 표장 ‘애니팡’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2004년 굳앤조이에서 이미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선데이토즈는 굳앤조이가 상표만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특허법원에 항소하여 캐릭터 분야 상표권을 취소시켰다. (사건 번호 2013허4565)

* 참고: 불사용 취소심판 = 상표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실제 상품/서비스 등 사용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상표는 기업의 이름,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 로고 등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시장에서 두드러지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기업명을 비롯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로고와 명칭을 포함하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러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상표권은 저작권과는 다르게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거나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라 다양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으로서는 소모적인 분쟁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고 최악의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치를 높인 상표권을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의 출발 시점부터 상표등록 및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I. 상표권의 요건

상표권으로써 보호를 받으려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중 심사과정에서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크게 상표등록요건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 중요한 요소만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등록의 요건

〈1〉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

만약, ‘전화기’라는 상표를 ‘전화기’라는 상품의 상표로 등록해 쓸 수 있다면 ‘전화기’라는 명칭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상품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이나 그 상품의 거래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습니다.

〈2〉 사물의 성질을 표시하는 명칭이거나 특정 지역명을 표시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과 마찬가지로 특정 제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여 사물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과 ‘서울’, ‘부산’, ‘광주’, ‘청계산’등과 같이 특정 지역명을 표시하는 명칭은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표가 될 수 없습니다.

〈3〉 간단하고 흔한 명칭이거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1글자의 한글, 2자 이내의 영문 또는 숫자 등과 간단하고

흔한 명칭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구호나 명칭으로 누구의 업무와 관련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흔한 명칭이 도안화하여 식별력이 인정되거나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식별력이 인정받으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저명한 타인의 성명 및 상호에 해당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한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필’, ‘오바마’ 등 저명한 타인의 이름 등을 비롯해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유명인의 이름이라도 내 이름일 경우와 저명한 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 가능합니다.

〈2〉 등록받으려는 상표가 각 나라의 국기, 국제기관의 명칭이나 표장에 해당하고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각 나라의 명칭이나 표장을 비롯 공서 양속에 반하는 단어는 원칙적으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3〉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은 먼저 상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등록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상표라 하더라도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상술한 상표등록 요건 및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표시한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을 알면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I. 주의사항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려한 다음 어느 분야에 대해 어떻게 상표권을 활용할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출원 시에 표기한 동일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업군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 상표는 현재 45개의 상품류로 구분되고 있으며 해당 상품 분류(유사군코드기준)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디자인권 – 디자인에 대한 보호

사례. 동양매직과 코웨이의 정수기 디자인 분쟁, 특허법원 2015.1.22 선고 2014허4821 판결

특허법원에서 코웨이의 한 뼘 정수기 등록 디자인과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의 유사한 부분은 모두 기존에 공개된 제품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상이거나 기능상 당연한 부분에 해당하고 지배적인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코웨이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준 사례

위 사례와 같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외관을 가리키지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외에도 환경 디자인, 패션 디자인, 보석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패키지, 화상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등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 디자인권의 요건

디자인권도 앞서 상술한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다른 산업체산권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디자인 권리의 획득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의 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디자인물이 양산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계에 의한 생산 외에 수공업에 의한 생산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정도의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미술 분야의 저작물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신규성

디자인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그 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안됩니다. 다만,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3〉 창작성

창작성은 특허에 있어서 진보성과 유사한 의미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위에서 상술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추더라도 외국의 국기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연적인 형상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II. 주의사항

디자인권 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에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 디자인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전에 먼저 출원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2016.07.29 기준 (★표는면제 ·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전자 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국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디자인 당 94,000원	디자인 당 45,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 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 + 지정상품 가산금
서면 출원	기본료	국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국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디자인 당 104,000원	디자인 당 55,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72,000원 +지정상품 가산금
	가산료	명세서 · 도면 ·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명세서 · 도면 ·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 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 매건 300,000원 ※ 외국어 특허 · 실용신안출원은 영어만 가능
-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12.4.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 ※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에 대한 비용이며, 대리인(변리사) 선임비용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 대리인 선임시 특하는 250~350만원, 상표는 30~40만원, 디자인은 40~60만원 정도 추가
- ※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서/보정서 작성 및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2) 저작권

사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저작권 침해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우리나라에서 열린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 히딩크 넥타이가 유명해지자 일어난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히딩크 넥타이’에 사용된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의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와 같이,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단순히 물품의 겉모양을 보기 좋게 장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제품의 본연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면서 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에 대해 각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면추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은 언론 매체에서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과 관련해 특허권 이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식은 사실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문학적 예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이를 창작한 저작자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부여되는데, 저작물이 창작된 순간부터 저작자의 생존기간을 포함해 사후 70년간 권리가 존속됩니다. 여기에서, 저작물의 표현은 특허의 보호대상인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예를 들어, 같은 아이디어에서 출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르게 표현되었다면 저작권법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저작물로 인식 됩니다. 즉, 휴대폰이라는 대상을 여러 사람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양식으로 표현하였다면 모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 저작권은 광고음악, 웹사이트 디자인,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앱, 소프트웨어 판매 플랫폼, 사업 브로셔 및 로고 등의 다양한 종류의 무형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특정 관청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되며,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양도 불가능한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양도 등 이전이 가능한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 그 밖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며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 등이 있습니다.

(1) 저작물의 종류

I. 어문 저작물

서적, 잡지, 문자화된 저작물, 연설 등 구술적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일 경우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II. 음악 저작물

클래식, 팝송, 가요, 오페라, 뮤지컬 등 음악에 속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III. 연극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동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IV. 미술 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포함하여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응용미술저작물은 앞서 사례로 예시된 ‘히딩크 넥타이’와 같이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V. 건축 저작물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설계도와 모형도 포함됩니다.

VII. 사진 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VIII. 영상 저작물

음의 수반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입니다.

VIII. 도형 저작물

평면이나 공간에 선이나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학술적 내용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미술저작물과 다릅니다.

IX.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에서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되어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했으나, 2009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X. 2차적 저작물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을 비롯해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XI. 편집 저작물

편집물의 소재, 구성, 내용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XII. 업무상 저작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2) 저작물의 보호범위

저작물은 독창성을 가지고 외부에 표현되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이디어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라면 저작물이 아닙니다. 이때, 저작물은 반드시 유형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 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타인이 감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무용은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이 있는데, 헌법 등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판례를 비롯해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유사한 것이 해당되며,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도 이에 해당됩니다.

(3)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한 민형사상 구제방법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자는 그 침해를 정지시키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제재를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수사당국에 고소하여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공정이용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즉, 저작물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임과 동시에 인류의 문화적 공유물인 것이므로 저작자의 창작활동이 오로지 개인의 창작 능력만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역사적 문화산물의 축적에 의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면서도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자의 권리가 인정하면서도 제한을 두어 아래와 같이 타인의 이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용 여부는 경우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안별로 구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I.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II.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 III.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 IV.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V.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VI.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VII.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VIII.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IX.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X.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 XI.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3)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아직 정의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 외에도 만화 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 판매하는 캐릭터,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프랜차이징 등도 최근 들어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신지식재산권으로 널리 알려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도메인네임 및 영업비밀에 대하여 국내의 보호방안 및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의 보호방안 및 현황

I. 저작권에 의한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은 과거에는 독자적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하다가 2009년 이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독점하여 귀속시킴으로써 개발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창조성에 대한 심사를 초기에 하지 않고 침해소송이 일어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초기비용은 적게 들지만 소송이 되면 그 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유사한 코드로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전부에 대한 복제가 아니라고 입증이 되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저작권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관련 분쟁은 프로그램 언어의 기술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단말기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이나 인터페이스 및 프로그램의 구조와 같은 비어문적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II. 특허권에 의한 보호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일련의 순서대로 표현될 때는 방법발명으로, 소프트웨어의 경우 여러 개의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물건발명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나 데이터를 기록한 매체도 물건발명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III.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 활용 및 주의사항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자가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기밀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코드가 도용될 위험이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타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해당 소프트웨어는 타기업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라이선스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방안 및 현황

정보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객 데이터, 공급사 리스트, 생산자 리스트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사상에 대한 것은 특허로서 보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I. 특허권에 의한 보호

특허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방법 등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임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II.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저작권법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에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정의하고(저작권법제2조),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6조제1항)고 하여, 국내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도메인네임 보호방안

최근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 및 활용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현실에서 사용하는 상표나 서비스 브랜드명으로 등록함으로써 다른 영업자와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들이 기업 웹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초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도메인네임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인기받은 도메인 대행업체를 통해 서둘러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련 현황

현실의 영업자와 사이버 공간에서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영업자가 서로 다를 경우 두 영업자 간에는 오인 혼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표제도는 등록주의 선원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와 손해배상 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표권자에게 부여되지만,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경우에는 도메인네임 등록기관과 신청자 간의 계약에 의해 사용권한이 제공되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 네임은 선착순으로 구매하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도메인네임에 대해 현실의 상표권을 소유한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상표권을 투기나 판매목적으로 무단으로 선점(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II. 국내의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련 보호 방안

국내에서는 2004년에 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유명상표와 표지 등을 도용하고자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금지하고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영업비밀의 보호방안

영업비밀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영에 유용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지칭하는 말로 보통 트레이드시크릿(tradesecret) 혹은 노하우(know-how)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 영업비밀의 요건

국내에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 이어야 하는데(비공지성),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비공지 상태인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보유자의 관리의사와 관리노력을 필요로 하고(비밀관리성) 있습니다. 즉, 해당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만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영업비밀 관리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밀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II. 스타트업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관리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해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2008.07.10. 선고 2008도3435판결)에 따르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따라야 할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판례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영업비밀 보호조치 10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접근 가능성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 ✓ 일반 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해야 합니다.
- ✓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영업비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 영업비밀 접근 / 사용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 ✓ 영업비밀 개발 / 보관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 ✓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 ✓ 분쟁에 대비한 영업비밀관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 보안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 ✓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고지해야 합니다.

III. 영업비밀보호센터 소개

영업비밀보호센터는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 기반조성 사업전담기관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내지 3에 의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원본증명제도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 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영업비밀 교육, 보호관리 시스템 제공 및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3

스타트업에 유용한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제도

1) 영업방법(BM) 특허

영업방법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BM이란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BM특허라고 해서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명세서상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잘못된 특허 상식

(1) 특허권을 획득하였거나 출원 중인 발명은 타인의 특허권 침해로부터 안전하다

비록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어렵게 획득한 특허도 경쟁사에 의해 회피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기술은 무조건 영업비밀로 간직해야 한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경쟁사에 의한 회피설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특허받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기술력이 높고 특허권의 가치도 높다

특허권을 획득한 것과 특허가치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공인된 감정인이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의한 정상적인 가치평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숨어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은 따로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의하여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등을 정하면 됩니다.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발명자는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기업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혜택

4) 특허기술 가치평가에 따른 활용방안

(1) 특허권 현물출자에 따른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 개선

개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에 대해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아 특허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현물 출자하여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고 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 현물 출자를 통해 자본금이 늘어나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현물 출자시에는 법원의 허가, 자본금의 등기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의 양도 및 직무발명 보상금에 따른 가지급금 정산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지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특허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즉, 개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 가치를 평가 하여 특허권의 가치가 금액으로 산정되면 해당 금액으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상계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가지급금 정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지식재산센터(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에서는 지역별로 발명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매년 각 지역별로 특허/상표/

디자인에 대한 국내권리화 및 해외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자금난 등으로 인해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 기술담보제도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기술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기술집약형 경쟁력 구조로 바꾸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 산업재산권의 우선심사제도

특허/실용신안은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대개 1년 이상 2년 정도가 소요되며, 상표와 등록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심사순위를 앞당겨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심사청구제도(무심사출원) 및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논문이 발표되거나 외부에 공지되어 특허출원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심사청구 없이 출원을 먼저 하여 출원일을 확보하고 이후 선출원된 발명을 공개되기 전 수정하거나 1년 이내에 개량된 발명으로 재출원할 수 있어 유용한 제도입니다.

9) PCT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150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국의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심사절차를 진입해야만 합니다.



10) 전략적 분할출원 제도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는 경우 그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형식적인 분할출원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 의도적으로 분할출원함으로써 양적으로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 양적으로 많은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 비록 권리범위가 유사할지라도, 소송/협상 등에서 특정 제품군 또는 기술군에 대해 많은 특허권을 제시할 수 있어 소송/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 1] 국내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 방법

◎ 지식재산권 등록 표시 「지식재산권의 명칭 + “등록” + 등록번호」 특허의 경우 “등록” 생략

- ① 특 허 : 특 허 제10-000000호,
방법특허 제10-000000호(방법특허인 경우)
- ②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 제20-000000호
- ③ 상 표 : 상표등록 제40-000000호
- ④ 디 자 인 : 등록디자인 제30-000000호

◎ 지식재산권 출원 표시 「지식재산권의 명칭 + “등록출원(심사중)” + 출원번호」

- ① 특 허 : 특허출원(심사중) 제10-년도-000000호,
방법특허출원(심사중) 제10-년도-000000호(방법특허인 경우)
- ②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중) 제20-년도-000000호
- ③ 상 표 : 상표등록출원(심사중) 제40-년도-000000호
- ④ 디 자 인 :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년도-000000호

[참고 2]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마크

◎ TM마크는 대개 상표의 우측 상단 위 첨자 형식으로 조그맣게 사용하는데, Trademark를 뜻하는 마크로서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우리회사가 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따라서, 상표가 등록되기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선등록된 타인의 상표가 있어 상표권자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할 경우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침해소송을 당할 경우에 TM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는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맥상 사용한 단어에 불과하여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TM마크가 있을 경우 상표의 사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침해반박 주장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에서는 TM마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마크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는 마크)

®마크는 등록된 상표라는 의미이며, TM마크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우측 상단 위 첨자 형식으로 표시하는데, 등록된 상표에 반드시 부착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다만, ®마크는 TM마크와 달리 법적으로 등록된 상표권임을 알리는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효과를 가진다. 즉, 상표 분쟁 시 ®마크를 부착한 상표를 모방하는 경우에 상표침해의 고의성이 추정된다. 보통 상표 출원 단계에서는 TM마크만 부착하다가 상표권이 등록되면 TM마크와 ®마크를 병기하거나 또는 ®마크만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기업이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질 경우에 ®마크 사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와 보유한 상표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업의 상표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일부 국가에 제품이 수출되는 경우에 ®마크가 사용되면 허위로 ®마크를 사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의 경우 ®마크의 오용 시 형사법으로 처벌될 정도로 회사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마크 사용을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때, ®마크 사용에 대한 마케팅 니즈는 TM마크로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 ©마크 (저작권표시)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인 베른 협약에 의해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표시인 ©마크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분쟁 시 ®마크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추정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을 표시하는 방법은 주로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소송 등 법적대응을 쉽게 하기 위해 표시하던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마크 외에 (c), copyright 와 함께 제작연도, 저작권자 이름을 함께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 2016. (이름) all rights reserved.

(c) 2016. (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6. (이름)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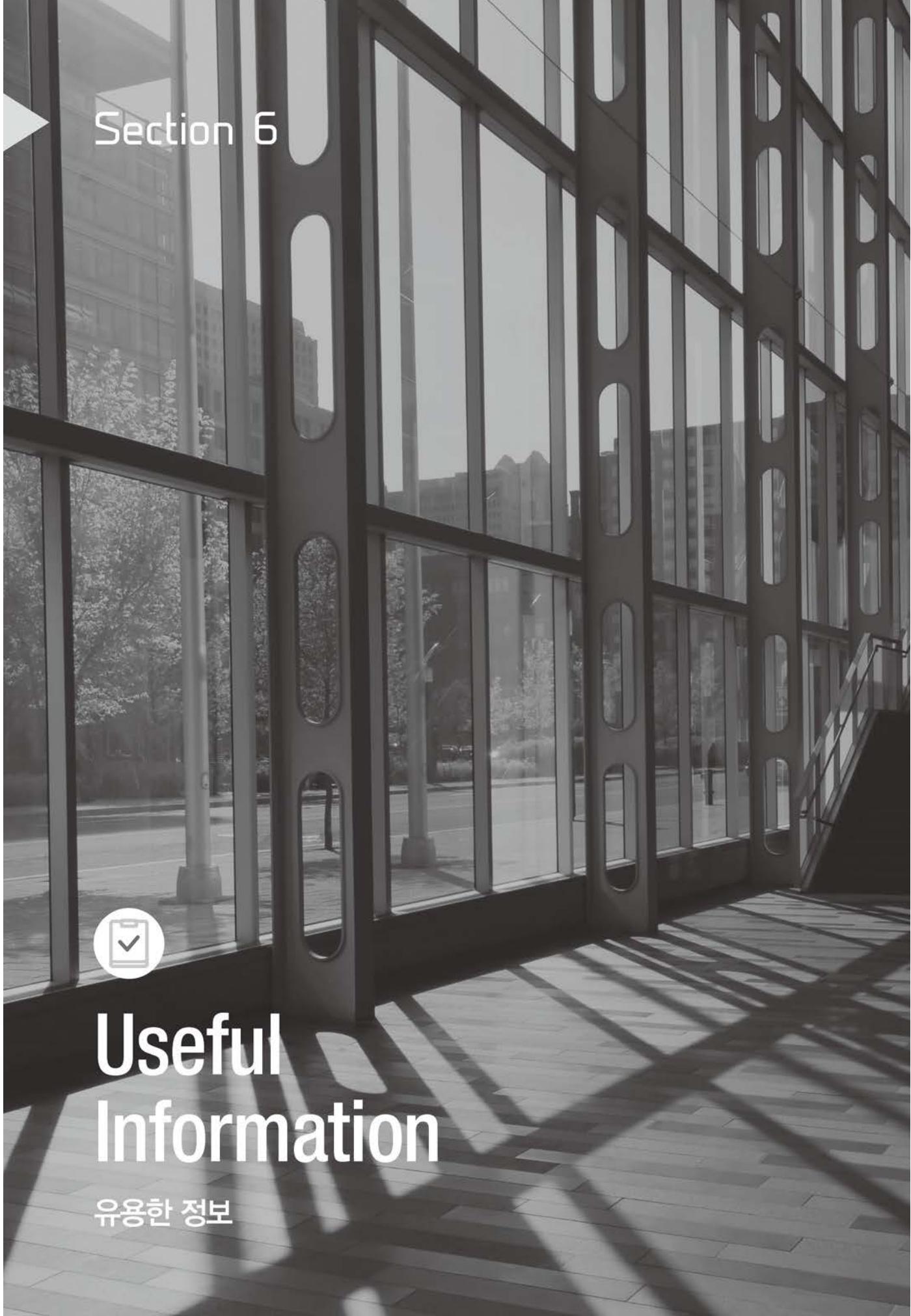
[참고 3]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스타트업에 유용한 사이트

구분	기관명	웹사이트
산업재산권	영업비밀보호센터 (원본증명기관)	www.tradesecret.or.kr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핵심기술자료 임치서비스)	www.ultari.go.kr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 (국내 및 해외 출원비용지원)	www.ripa.org
	한국발명진흥회 [KIPA] (특허종합지원)	www.kipa.org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IPA] (지재권소송보험, 지재권보호지원)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KISTA] (특허기술평가지원, 기술금융연계지원)	www.kista.re.kr
	한국특허정보원 [KIPI] (특허정보토탈서비스)	www.kipi.or.kr
저작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PCC] (산업재산권 관련상담지원)	www.pcc.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및 분쟁조정신청)	www.copyright.or.kr
특허정보검색	한국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IPRIS] (국내외 무료특허정보검색, 특허분야 구인구직)	www.kiprs.or.kr
	디자인맵 (디자인권관련 정보검색 및 트렌드안내)	www.designmap.or.kr
	TM서치 (국내유일 한국/중국 상표 서치 전문사이트)	www.tmsearch.co.kr
	바이오의약 특허정보시스템 [KOBICS] (바이오의약관련 전문검색사이트)	www.kobics.or.kr
	㈜월스 (국내 최대 유료특허정보검색 사이트)	www.wipson.com
	e특허나라 (특허동향조사)	www.patentmap.or.kr
유관기관	한국 특허청 [KIPPO]	www.kipo.go.kr
	한국 디자인 진흥원 [KIDP]	www.kidp.or.kr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www.idrc.or.kr
정부지원사업관련 (중소기업)	창업넷 (창업정보 토탈서비스)	www.k-startup.go.kr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www.semas.or.kr
	기업마당 (중소기업관련 정부지원사업 맞춤형 통합검색)	www.bizinfo.go.kr
정부지원사업관련 (R&D)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www.keit.re.kr
	국가 R&D 사업관리 사이트	rndgate.ntis.go.kr
특허관리회사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ID] (특허관리회사-NPE, 기술창업지원)	www.i-discovery.com

[참고 4]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체크리스트

No	항목	체크	
1	고용계약서 내에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관한 항목이 들어 있다.	예	아니오
2	외부 계약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관한 항목이 들어 있다.	예	아니오
3	기업에서 만든 자료에는 저작권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예	아니오
4	기업명이나 제품명을 결정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선등록 상표의 서치를 진행하였고,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하였다.	예	아니오
5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였다.	예	아니오
6	제3자와 업무상 회사기밀을 공유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한다.	예	아니오
7	영업비밀 및 사업기밀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예	아니오





Section 6

Useful Information

유용한 정보

Useful Information

- 01 [스타트업 관련 주요 기관 리스트](#)
- 02 [스타트업 관련 유용한 사이트 리스트](#)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인재채용, 자금조달, 세무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사무공간도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정부산하기관, 엑셀러레이터, VC, Co-Working Space 등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스타트업 관련 주요 기관 리스트

1) 액셀러레이터

기관명	특징 및 역할	URL
D.Camp	18개 전국은행연합회 회원 금융기관이 출범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목적의 비영리 재단으로 스타트업 펀딩, 공간 제공,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www.dcamp.kr
프라이머	스타트업의 성장을 돋는 국내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 펀딩, 인큐베이팅, 해외진출 지원, 엔터십, 데모데이 등 다양한 지원 활동 운영	www.primer.kr/
스파크랩스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모바일, E-commerce, 디지털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분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www.sparklabs.co.kr
퓨처플레이	초기 단계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futureplay.co
매쉬업엔젤스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바일, 커머스 등 ICT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경영, 전략, 서비스, 마케팅, PR, 법률 등 다양한 멘토링 및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www.mashupangels.com
액트너랩	하드웨어 기반 스타트업 대상으로 창업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돋는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actnerlab.com
Accelerate Korea	다양한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진출을 돋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www.acceleratekorea.com/
GVC 글로벌벤처센터	중소기업청과 IT전문기업이 함께 설립한 액셀러레이터로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가 일정기간 입주하여 제품 서비스 개발, 자금 확보,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www.gvc.or.kr/
KSP (Korea Seed Partners)	사이버 보안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IoT, 핀테크 등과 관련된 보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창업가들의 멘토링 제공 및 지분투자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www.koisraseedpartners.com
Kstartup	국내의 스타트업 및 창업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중 멘토링 및 워크샵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kstartup.com/
N15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제품 디자인&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양산 프로세스, 제품 패키징 및 생산관리, 전자상거래 및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해커톤 행사를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www.n15.asia/

2) 대기업 산하 액셀러레이터

기관명	특징 및 역할	URL
롯데액셀러레이터	유통, 식품, O2O, 패션,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유망 부문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창업 지원금, 사무공간 등 지원	lotteacc.com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	스마트폰 환경하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문적인 멘토링, 스타트업 특화 세미나, 네트워킹,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oic.skplanet.com
천재교육 ED-Tech센터	(주)천재교육 산하 에듀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기관으로 투자 및 멘토링, 회계/재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www.facebook.com/edtechcenter/?ref=page_internal
네이버 D2 스타트업팩토리	네이버 산하 스타트업 지원 센터로 테크 스타트업 대상 직접 투자, 클라우드 서버 및 솔루션 등이 포함된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패키지, 사무공간 제공	d2startup.com
한화 드림플러스 서울	한화그룹에서 추진하는 ICT 액셀러레이팅 사업으로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아시아 진출 시 아시아 각국의 Dream Plus Alliance와 함께 워킹스페이스, 멘토링, IR, 마케팅 등 서비스 현지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dreamplus.asia/kr
한화 드림플러스 63	한화생명 산하 핀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기관으로 사무공간 무상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법률/회계/세무/홍보/마케팅 및 기타 분야 컨설팅 제공, 직접 투자 및 국내외 유명 투자자들과의 투자 연계 지원	N/A
원큐랩	하나은행 산하 핀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기관으로 사무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법률·특허 멘토링 및 그룹 계열사와의 사업 연계, 직·간접투자 진행	N/A
KB스타터스밸리	KB금융 산하 핀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기관으로 멘토링, 제휴 사업 추진, 사무공간 제공,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픈트레이드'를 통한 펀딩 지원, KB투자증권과의 매칭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의 투자금 제공	N/A
신한퓨처스랩	신한금융그룹 산하 핀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기관으로 금융 및 기술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멘토링 제공, 사무공간 지원, 제휴사업 추진, 직접투자 및 외부 VC와의 투자연계	futureslab.kr
위비핀테크랩	우리은행 산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기관으로 계열사 내 금융전문가 집단 멘토링 및 제휴 사업 추진, 사무공간 제공, 직접 투자	N/A

3) 정부 및 기타 단체

기관명	특징 및 역할	URL
미래창조과학부	해외 진출 포함 광범위한 스타트업 지원 사업 기획	www.msip.go.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통상 및 자원 등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지원 사업 기획	www.motie.go.kr
KOTRA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www.kotr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IoT 등 IT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www.kisa.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 콘텐츠 등 ICT 연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KIC 실리콘밸리를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	www.nipa.kr
중소기업진흥원	스타트업 대상으로 다양한 R&D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www.tipa.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hp.sbc.or.kr
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용산, 강남, 송파 지역의 스타트업 센터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하여 멘토링, 컨설팅, 유통 마케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www.sba.seoul.kr
창업진흥원	창업 준비, 실행, 성장, 재도전 등 단계별 맞춤형전략에 기반하여 TIPS, 교육, 멘토링, 판로개척, 해외진출,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	www.kised.or.kr/
KICT 본투글로벌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주도의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출범된 스타트업 지원센터로 유망한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전문 컨설팅, 교육, 창업 공간 등 다양한 가치있는 서비스 제공	www.born2global.com
K-ICT 창업멘토링센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고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로 벤처 1세대들의 멘토링과 R&D 자금, 해외진출 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gomentoring.or.kr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의 콘텐츠/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제작, 유통, 홍보 등 콘텐츠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 분석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www.gcon.or.kr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관 협력단체로 다양한 스타트업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kr.startupall.kr
(사)스타트업포럼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커뮤니티 운영, CEO아카데미, 창업 및 취업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www.suf.or.kr

기관명	특징 및 역할	URL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대상 신용보증, 기업신용정보 관리, 어음 부도 방지 보험, 경영지도 컨설팅 제공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스타트업 대상 기술평가, 대출보증지원 정부출연 안내	www.kibo.or.kr
(사)한국벤처캐피탈 협회	벤처캐피탈 현황, 운용 펀드 정보(등록일, 만기일, 투자 분야 및 목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제공	www.kvca.or.kr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육성 목적으로 다양한 특화교육 진행 및 벤처 기업인증패 발급 지원	www.venture.or.kr
한국M&A센터	건전한 M&A 생태계 조성과 선순환 구조를 목적으로 상장사/투자사, 스타트업을 매칭하는 M&A 전문플랫폼	mnacenter.com
KRX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	자금조달 및 자본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KSM(2016년 하반기 개설 예정), M&A 중개망, 상장 교육 및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startup.krx.co.kr
마루180	아산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교육, 투자, 네트워킹 등 창업 관련 종합 솔루션 제공	maru180.com
WeWork	1명~100명 이상 규모의 팀 수용이 가능한 사무 공간을 제공하며 VC와의 미팅, 분야별 전문가들의 멘토링 등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www.wework.com
マイクインパクトス튜디オ	마루180의 1층에 위치한 스타트업, 프리랜서 대상의 코워킹스페이스로 법률, 회계,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studio.micimimpactsquare.com/

2

스타트업 관련 유용한 사이트 리스트

사이트명	특징 및 역할	URL
온오프믹스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폭넓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모임문화 플랫폼	www.onoffmix.com
플래텀	국내를 비롯하여 중화권 시장에 국내 스타트업을 알리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platum.kr
비석세스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고 알리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kr.besuccess.com/
벤처스퀘어	한국의 스타트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최근 뉴스를 전달하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이자 엑셀러레이터	www.venturesquare.net
로켓펀치	다수의 스타트업 DB가 존재하며 스타트업 홍보, 인재 채용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스타트업 네트워크	www.rocketpunch.com
벤처투자정보센터	벤처캐피탈 현황, 통계 등 벤처 관련한 자료 확인이 가능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에서 운영하는 벤처투자정보 플랫폼	vcic.kvca.or.kr/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거래정보망	M&A 추진 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전문 자문기관과 연결을 지원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운영하는 M&A거래 정보망	www.mna.go.kr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투자회사 공시시스템	diva.kvca.or.kr
엔젤투자지원센터 기업정보검색시스템	스타트업 정보가 필요한 엔젤투자자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정보검색시스템	search.kban.or.kr

삼정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

삼정KPMG는 창업/성장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지속 성장과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스타트업·벤처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KPMG SIC)를 개소하였습니다.

KPMG SIC는 국내/외 KPMG의 중장기 성장전략, 해외시장 진출, 재무/회계/세무, Funding 및 M&A에 필요한 경영 전문가들과,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바이오, 소비재 등 산업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벤처기업들에게 맞춤형 경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성장 단계별 체계적 맞춤 서비스

국내 스타트업 중 상당수가 회계/재무/세무 등 경영 관리적 요소가 취약해 안정적 성장 및 이후 자본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정KPMG SIC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꼭 필요한 회계, 재무, 세무, Financing, 해외진출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ne-Stop Solution 서비스

Startup ·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인 삼정KPMG SIC를 중심으로 2,50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인력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One-Stop Solution을 제공합니다.

국내 모든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각 본부의 전문가들과 회계, Financing, 전략컨설팅, 국제통상, 세무, 법무, 경제연구소 등 각 Function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lobal Network 연계 서비스

전 세계 주요 30여개국에 걸쳐 있는 KPMG Global Startup Innovation Center Network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통하여 스타트업 발굴 및 소개, 해외 진출 및 투자 연계, 글로벌 연계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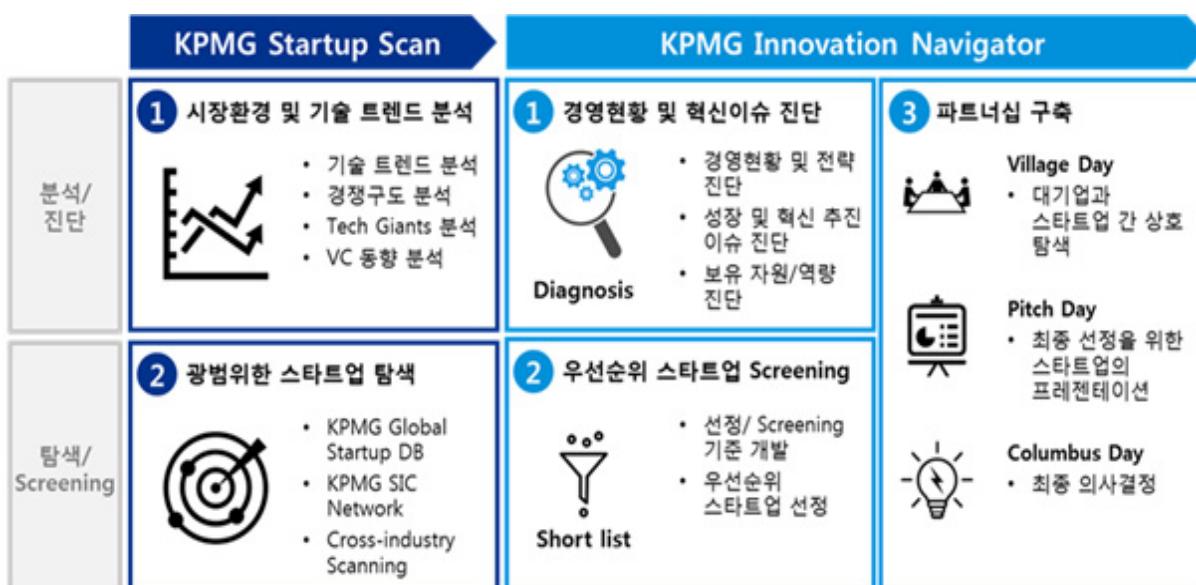


대기업-스타트업 연계 지원 서비스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파트너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중견/대기업들도 혁신적인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성장동력을 모색하며,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실제 글로벌 선도 기업에서는 스타트업과의 성공적 협업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스타트업을 적시에 발굴하고, 비즈니스 Fit이 맞는지 검증하고, 협업을 통해 빠르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며, 적합한 대기업과의 컨택 포인트를 찾기 어렵고, 대기업의 더딘 의사결정으로 인해 적합한 투자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삼정KPMG SIC는 Global KPMG의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에 적합한 스타트업을 적시에 찾아서 매칭하는 “KPMG Startup Scan” 서비스와 스타트업-기업간 한시적/집중적 Co-work Process를 통해 새로운 Value Proposition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KPMG Innovation Navigato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윤권현 상무이사

삼정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
T.02-2112-7495
E.kyoon@kr.kpmg.com

박상원 이사

삼정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
T.02-2112-7711
E.sangwonpark@kr.kpmg.com

심종선 매니저

삼정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
T.02-2112-3085
E.jongseonshim@kr.kpmg.com

임연희 회계사

삼정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
T.02-2112-3923
E.yeonheelim@kr.kpmg.com

최윤서 연구원

삼정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
T.02-2112-3936
E.yoonseochoi@kr.kpmg.com

<https://home.kpmg.com/kr/ko/home.html>